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및 자체점검 관련 법령집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Korea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Association



I 발간사 I

“점검 품질향상”은 최근 몇 년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와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4년, 협회장 1년 동안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이 더 안전해지길” 소망하면서 소방시설의 점검 품질향상과 안전관리에 남다른 자긍심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소방시설의 점검은 법령에 근거하며, 건축물 허가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써 소방시설별 수십 년 전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첨단·대형화와 특정 화재 발생 및 사회적 안전 수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건축 시기와 소방시설별 개정 기준을 찾아 점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관계인, 점검기술자 모두가 개정법령을 알아야 정확한 점검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법령을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없을까? 소방관서와 소방대상물 관계인 그리고 점검 기술자가 통일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협회장 취임 1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조심스럽게 첫발을 디딤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 연혁, 소방청 질의·회신과 고시·훈령 및 업무 지침”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관계인 그리고 점검 기술자들이 바르게 활용하여 소방시설의 점검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소방청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점검 품질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깨어있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이 기 배



I 목차 | Contents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연혁	11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12
2.	자동소화장치	19
3.	옥내소화전설비	21
4.	스프링클러설비	30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2
6.	물분무등소화설비	71
7.	옥외소화전설비	87
8.	단독경보형감지기	91
9.	비상경보설비	93
10.	자동화재탐지설비	99
11.	시각경보기	113
12.	화재알림설비	115
13.	비상방송설비	116
14.	자동화재속보설비	118
15.	통합감시시설	127
16.	누전경보기	128
17.	가스누설경보기	132
18.	피난기구	133
19.	인명구조기구	138
20.	유도등	143
21.	비상조명등	150
22.	휴대용 비상조명등	153



23.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54
24. 제연설비	159
25. 연결송수관설비	165
26. 연결살수설비	169
27. 비상콘센트설비	173
28. 무선통신보조설비	175
29. 연소방지설비	177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179

1. 2024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주요 개정 시행령·규칙	180
1-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개정	180
1-2.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181
1-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개정	184
1-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개정	186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9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0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209
2-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223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252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65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9
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0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305
3-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318
3-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338
3-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353
4.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377
4-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78
4-2. 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385
4-2-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85
4-2-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388
4-2-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399
4-2-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402
4-2-5.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407
4-2-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409
4-2-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410
4-3. 소방 경력관련 행정규칙	417
4-3-1.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417
4-3-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419
4-3-3.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421
4-3-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426
4-4.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427
4-4-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427
4-4-2.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429
4-4-3.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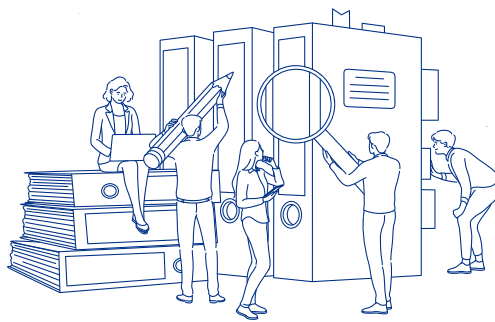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소방청) 433

1. 2022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436
1-1.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436
1-1-1.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436
1-1-2.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483
1-2. 소방시설법	
1-2-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489
1-2-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92
1-2-3.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494
1-2-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503
1-2-5.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 제출	505
2. 2023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508
2-1. 소방시설법	508
2-1-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508
2-1-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510
2-1-3.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513
2-1-4.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516
2-1-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524

일 러 두 기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제정·신설·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해당연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개정연혁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간 이후 인용된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연혁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1968.1.15. 제정	- 극장, 영화관, 관람장,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화재경계지구(시장지대, 공장, 창고 등이 조밀한 지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위험물의 저장지대) 안의 주택, 점포 등 - 연면적 150㎡ 이상 - 공회당, 집회장, 음식점, 요정·요리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공중목욕장, 공장, 작업장, 영화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방송시설장, 창고 등 - 연면적 300㎡ 이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정거장, 발착장, 승강장, 사찰, 교회,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사업장 등 - 지정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1973. 12. 29. (1973. 12. 29.)	<table border="1"> <tr> <td>개정</td><td>4.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td></tr> </table> - 공연장, 관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중요문화재, 아케이드, 화재경계지구(시장지대, 공장, 창고 등이 조밀한 지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위험물의 저장지대) 안의 주택, 점포 등 - 연면적 150㎡ 이상 - 집회장, 음식점, 요정·요리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공중목욕장, 영화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창고 등 - 연면적 300㎡ 이상 -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사업장 등 -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개정	4.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개정	4.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1980. 4. 15. (1980. 4. 15.)	개정	1. 연면적 33㎡ 이상 신설 2. 음식점,유형음식점 150㎡ > 33㎡
		1. 연면적 33㎡ 이상 가. 공연장, 관람장, 유기장, 댄스홀, 카바레, 중요문화재, 아케이트, 주차, 음식점, 유형음식점 등 2. 연면적 150㎡ 이상 가. 집회장,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3층이상의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공중목욕장, 영화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창고 등 3. 연면적 300㎡ 이상 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치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사업장 등 4.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음식점의 경우 33㎡ 이상)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고압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2. 2종 장소 가. 연면적 300㎡ 이상(4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의 경우 15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고압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3. 3층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 (1)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고압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4. 지하가 가. 연면적 15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kg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1990. 6. 29. (1990. 7. 1.)	개정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1. 1층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음식점의 경우 33㎡ 이상)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2. 2층 장소 가. 연면적 300㎡ 이상(4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의 경우 15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3. 3층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 (1)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4. 지하가 가. 연면적 15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kg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1991. 1. 8. (1991. 1. 8.)	개정 4층 이상의 공동주택 → 아파트 1. 1종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음식점의 경우 33㎡ 이상)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2. 2종 장소 가. 연면적 300㎡ 이상(아파트,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의 경우 15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3. 3종 장소 가. 연면적 150㎡ 이상 (1)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1/5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연료용가스(월 사용량 1,000㎥ 이상)가연성가스 40kg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4. 지하가 가. 연면적 15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1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kg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1994. 7. 20. (1994. 7. 20.)	개정	소화기구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 → 가스시설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004. 5. 29. (2004. 5. 30.)	신설	3. 터널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006. 12. 7. (2006. 12. 7.)	신설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 설치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 설치 (2007. 6. 7. 시행)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2. 4. (2010. 2. 4.)	개정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012. 1. 31. (2012. 2. 5.)	개정	수동식 소화기 →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 투척용 소화용구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020. 12. 10. (2020. 12. 10.)	신설	4. 지하구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4. 지하구

개정일 (시행일)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기준	
2021. 8. 24. (2022. 2. 25.)	신설	2. 가스시설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2022. 11. 29. (2022. 12. 1.)	개정	2. 지정문화재 → 문화재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수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2024. 5. 7. (2024. 5. 17.) 현행	개정	2. 문화재 → 국가유산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 연면적 33㎡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2 자동소화장치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994. 7. 20. (1994. 12. 28) 신설	1.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97. 9. 27. (1997. 9. 27.)	개정 1. 11층 이상 → 6층 이상 1.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
2004. 5. 29. (2004. 5. 30.)	개정 1. 아파트 1. 아파트
2011. 10. 28. (2012. 2. 5.)	개정 1.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1.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012. 1. 31. (2012. 2. 5.)	개정 명칭 개정 : 자동식소화기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014. 7. 7. (2014. 7. 8.)	개정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교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교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2015. 10. 7. 시행) ※ 부칙 :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시행일)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2015. 1. 6. (2015. 1. 8.)	개정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2023. 12. 01. 시행)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2023. 12. 1. 시행)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2)는 2023년 12월 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의 후생기관 등



3 옥내소화전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 연면적 5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 가.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등 - 연면적 7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 가.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음식점, 요정, 요리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승강장, 공장, 작업장, 영화장 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방송 시설장, 창고 등 - 연면적 1,0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20㎡) 가. 사찰, 교회,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사업장 등 - 지정수량 750배 이상 설치기준 가. 제1류·2류·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개정 - 연면적 5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 - 연면적 7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 - 연면적 1,0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200㎡)
1973. 12. 29. (1973. 12. 29.)	- 연면적 5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아케이트 - 연면적 7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 가.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대합실, 창고 등 - 연면적 1,0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200㎡) 가. 사찰, 교회, 사업장 등 - 지정수량 750배 이상 설치기준 가. 제1류·2류·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980. 4. 15. (1980. 4. 15.)	개정 2. 유기장(마작집 삭제), 3층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5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아케이트 - 연면적 7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 가. 카바레, 유기장(마작집 삭제), 바, 오락장, 댄스홀, 음식점, 요정, 요리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병원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승강장, 공장, 작업장, 영화장 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방송 시설장, 창고, 사업장 - 연면적 1,000㎡ 이상(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200㎡) 가. 사찰, 교회 - 지정수량 750배 이상 설치기준 가. 제1류·2류·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층 장소 가. 연면적 2,100㎡ 이상(공연장, 경기장, 집회장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 이상) (1)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제1류·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 이상(공연장, 경기장, 집회장의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것 2층 장소 가. 연면적 2,100㎡ 이상(교회, 사찰의 경우에는 3,00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제1류·제2류 또는 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450㎡ 이상(교회, 사찰의 경우에는 600㎡ 이상)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3. 3층 장소 가. 창고로서 연면적 2,100㎡ 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제1류·제2류 또는 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450㎡ 이상 4. 지하가 가.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제1류·제2류 또는 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중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1종 · 2종 · 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2. 연면적 1,500㎡ 이상 가.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1994. 7. 20. (1994. 7. 20.)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2. 연면적 1,500㎡ 이상 가.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1997. 9. 27. (1997. 9. 27.)	개정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이상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2. 연면적 1,500㎡ 이상 가.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이상
2002. 3. 30. (2002. 3. 30.)	개정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이상
2004. 5. 30. (2004. 5. 29.)	개정 판매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며,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4.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5.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이상
2010. 2. 4. (2010. 2. 4.)	개정 무창층 → 무창층(축사는 제외)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 5. 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2011. 4. 6. (2011. 7. 7.)	개정 설치기준 개정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제외)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 5. 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2011. 10. 28. (2012. 2. 5.)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삭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제외)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 이상 - 연면적 1,500㎡ 이상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복합건축물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 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2017. 1. 26. (2017. 1. 28.)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896 486 1031">개정</td><td data-bbox="494 896 1272 1031">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2018. 1. 27. 시행)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터널 </td></tr> </table>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제외)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2018. 1. 27. 시행) -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터널 - 연면적 1,500㎡ 이상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복합건축물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	개정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2018. 1. 27. 시행)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터널
개정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2018. 1. 27. 시행)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터널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5. 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다목2)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6. 26. (2018. 6. 27.)	개정 장례식장 → 장례시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지하층, 무창층 (축사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는 터널 3. 연면적 1,500㎡ 이상 가.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층 4.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 5. 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개정일 (시행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내용 개정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000㎡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스프링클러설비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 극장, 영화관, 집회장, 공회당, 집회장 등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것에 있어서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것에 있어서는 500㎡ 이상 - 백화점, 시장 등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2호에 계기한 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등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닥면적 1,000㎡ 이상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등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닥면적 1,500㎡ 이상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설치기준 개정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 - 백화점, 시장 등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 창고 천장의 높이가 10m를 넘고 연면적이 700㎡ 이상의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 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백화점, 시장 등은 바닥면적 1,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음식점,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등은 바닥면적 1,500㎡ 이상 - 공연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등 중 1,2,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중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의 것
	신설 3.공장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 - 백화점, 시장 등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3. 공장 - 창고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고 연면적이 700㎡ 이상의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층의 바닥면적이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백화점, 시장 등은 1,000㎡ 이상,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층의 바닥면적이 음식점,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등은 1,500㎡ 이상 - 공연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중 1,2,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중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의 것
1976. 3. 27. (1976. 3. 27.)	
1980. 4. 15. (1980. 4. 15.)	신설, 개정 설치기준 개정, 5.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 백화점, 시장 등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3. 공장 4. 창고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고 연면적이 700㎡ 이상의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5.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6. 1호 내지 5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7.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층의 바닥면적이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백화점, 시장 등은 1,000㎡ 이상, 1호 내지 5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층의 바닥면적이 음식점,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8. 소방대상물 중 1,2,6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중 여관, 호텔, 여인숙등은 그 주된 용도에 공하는 부분,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기숙사, 하숙, 병원,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의것
1981. 11. 6. (1981. 11. 6.)	신설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탕 등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2류 또는 제5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 이상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 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 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로서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지하가 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984. 7. 1. (1984. 6. 30.)	신설 1종 장소 라. 바닥면적 1,500㎡ → 1,000㎡ 마. 11층 이상의 부분 → 전층 바.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 100㎡ →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 200㎡, 준불연, 불연재료 → 불연재료 500㎡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2종 장소 나. 바닥면적 1,500㎡ → 1,000㎡ 다.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 100㎡ →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합계 200㎡, 준불연, 불연재료 → 불연재료 500㎡ 이상인 것. 라.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 1층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탕 등
 -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의 무대부분(무대에 부설된 장치물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인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마.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방화구획된 부분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에는 500㎡ 이상)인 것.
 -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2. 2층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3. 3층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4. 지하가 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990. 6. 29. (1990. 7. 1.)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519 486 828">개정</td><td data-bbox="494 519 1272 828"> 1종 장소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종 장소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마.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td></tr> </table>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탕 등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의 무대부분(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것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마.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개정	1종 장소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종 장소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마.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개정	1종 장소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종 장소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마.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마.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3. 3층 장소 : 창고,차고,주차장,비행기 격납고 등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지하가 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992. 7. 28. (1992. 7. 28.)	신설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의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그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이상,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무대부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인 것은 전층 3.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8. 1호 내지 3호 · 5호 또는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9. 1호 내지 3호 · 5호 ·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를 제외한다)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1994. 7. 20. (1994. 7. 20.)	개정	지하층을 제외한 → 층수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그 무대부가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무대부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층수가 4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인 것은 전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로서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7.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1995. 8. 10. (1995. 8. 10.)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510 486 909">개정</td><td data-bbox="494 510 1273 909"> 2.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 5.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8.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를 제외한다) →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2호 및 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td></tr> </table>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그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이상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이상인 무대부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개정	2.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 5.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8.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를 제외한다) →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2호 및 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 이상 →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이상 →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 5. 연면적 2,100㎡ 이상인 것 →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8.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를 제외한다) →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2호 및 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1997. 9. 27. (1997. 9. 27.)	<table border="1" data-bbox="386 539 1273 861"> <tr> <td data-bbox="386 539 486 861">개정</td><td data-bbox="494 539 1273 861">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td></tr> </table>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개정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개정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2001. 3. 20. (2001. 5. 21.)	신설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02. 3. 30. (2002. 3. 30.)	신설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단서 삭제>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공장 및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8.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9. 1호 내지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1호 내지 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신설	설치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 제실, 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1호 내지 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2004. 5. 29.
(2004. 5. 30.)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05. 11. 11. (2005. 11. 11.)	개정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 제실, 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1호 내지 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08. 2. 15. (2008. 8. 16.)	개정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10.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1.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나.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 제실, 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것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5.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7.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1호 내지 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9.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10.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1.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나.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2010. 2. 4. (2010. 2. 4.)	개정 7.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사·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것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6.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7.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1호 내지 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9.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10.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1.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나.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11. 4. 6. (2011. 7. 7.)	개정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사·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1호 내지 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1.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나.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2014. 7. 7. (2014. 7. 8.)	개정 설치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고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유치장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15. 6. 30. (2015. 7. 1.)	개정 4.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갇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017. 1. 26. (2017. 1. 28.)	개정 3. 층수가 11층 이상 → 층수가 6층 이상 (2018. 1. 18. 시행)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2018. 1. 18. 시행)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8. 6. (2019. 8. 6.)	개정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갇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020. 9. 15. (2020. 9. 15.)	개정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호, 2호, 4호, 5호 및 8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호, 2호, 4호, 5호 및 8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13. 1호부터 12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021. 8. 24. (2022. 2. 25.)	신설, 개정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호, 2호, 4호, 5호 및 8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1호부터 6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호부터 13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6 853 486 944">개정</th><th data-bbox="491 853 1276 944">설치기준 개정</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950 486 1779"></td><td data-bbox="491 950 1276 1779">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호부터 6호까지 및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td></tr> </tbody> </table>	개정	설치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호부터 6호까지 및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개정	설치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호부터 6호까지 및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개정일 (시행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호부터 13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01. 3. 20. (2002. 1. 1.) 신설	1. 다중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 ※ 부칙 : (시행일)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 5. 29. (2004. 5. 30.)	개정 2.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 층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 1.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 2.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 층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
2006. 12. 7. (2006. 12. 7.)	개정 1. 삭제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전 층 1. 삭제<2006. 12. 7.>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전 층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
2008. 2. 15. (2008. 8. 16.)	개정 4.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1. 삭제 <2006. 12. 7>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전 층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것 4.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2011. 10. 28. (2012. 2. 5.)	신설	설치기준 개정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전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2012. 1. 31. (2012. 2. 5.)	개정	3.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전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2015. 6. 30. (2015. 7. 1.)	개정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노유자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②부터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2019. 8. 6. (2019. 8. 6.)	개정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노유자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②부터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제12조제1항제6호 ①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④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⑥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2020. 9. 15. (2020. 9. 15.)	개정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노유자 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제12조 제1항제6호 ②부터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① 노인 관련 시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노유자 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제12조제1항제6호 ②부터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제12조제1항제6호 ① 노인 관련 시설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②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④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⑥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2021. 8. 24. (2022. 2. 25.)	개정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는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노유자 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제12조제1항제6호 ②부터⑥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2022. 11. 29. (2022. 12. 0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기준 개정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같은 호 ②부터 ⑤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개정일 (시행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7.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④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⑤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⑥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6 물분무등소화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1. 비행기격납고 - 포말 소화설비 2. 바닥면적 200㎡이상(1층의 경우 500㎡이상) -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분말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장, 격납고로서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3. 바닥면적 500㎡ 이상 - 물분무, 불연성가스, 포말, 분말소화설비 가. 통신기기실 4.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 가. 1류 또는 2류 준위험물 : 물분무, 포말소화설비, 나. 4류 준위험물 : 물분무, 불연성가스, 증발성액체, 분말 다. 5류 준위험물 : 물분무소화설비 라. 석탄, 목탄 : 물분무, 포말소화설비 마. 석탄 및 목탄이외의 특수가연물 :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2. 바닥면적 200㎡이상(1층의 경우 500㎡이상) -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분말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장으로서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4.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 나. 4류 준위험물 : 포말소화설비 추가
		1. 비행기격납고 - 포말 소화설비 2. 바닥면적 200㎡이상(1층의 경우 500㎡이상) -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분말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장, 격납고로서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3. 바닥면적 500㎡ 이상 - 물분무, 불연성가스, 포말, 분말소화설비 가. 통신기기실 4.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 가. 1류 또는 2류 준위험물 : 물분무, 포말소화설비, 나. 4류 준위험물 : 물분무, 불연성가스, 증발성액체, 분말, 포말소화설비 다. 5류 준위험물 : 물분무소화설비 라. 석탄, 목탄 : 물분무, 포말소화설비 마. 석탄 및 목탄이외의 특수가연물 : 물분무, 포말, 불연성가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1980. 4. 15. (1980. 4. 15)	개정 불연성 가스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소화설비 삭제 - 비행기격납고 - 포말 소화설비 - 바닥면적 200㎡ 이상(1층의 경우 500㎡ 이상) - 물분무,포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차고, 주차장으로서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 바닥면적 500㎡ 이상 - 물분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통신기기실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 가. 1류 또는 2류 준위험물 : 물 분무, 포말소화설비 나. 4류 준위험물 : 물분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 포말소화설비 다. 5류 준위험물 : 물분무소화설비 라. 석탄, 목탄 : 물분무, 포말소화설비 마. 석탄 및 목탄이외의 특수가연물 : 물분무, 포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바닥면적 200㎡ 이상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발전실, 변전실, 보일러실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 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 이상인 것. 나. 창고로서 지정수량 1,000배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1984. 6. 30. (1984. 7. 1.)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596 486 710">개정</td><td data-bbox="494 596 1272 710">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td></tr> </table>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강습소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 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 이상인 것. 나. 창고로서 지정수량 1,000배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개정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개정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1990. 6. 29. (1990. 7. 1.)	개정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모든 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이상인 것. 다만, 승강기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강습소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모든 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이상인 것. 다만, 승강기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나. 창고로서 지정수량 1,000배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1991. 1. 8. (1991. 1. 8.)	개정 가. 차고 또는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당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층(주차한 모든 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이상, (건축물의 옥상 300㎡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이상인 것. 다만, 승강기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을 포함한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차고 또는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당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층(주차한 모든 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이상, (건축물의 옥상 300㎡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이상인 것. 다만, 승강기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나. 창고로서 지정수량 1,000배이상의 제1류·제2류·제4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991. 1. 8.) 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지정수량 1,000배 이상 가.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2. 연면적 800㎡ 이상 가. 주차용 건축물 3. 바닥면적 200㎡ 이상 가.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차고 4. 20대 이상 주차 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5. 바닥면적 300㎡ 이상 가.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이 경우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1994. 7. 20. (1994. 7. 20.)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가. 비행기격납고 3. 바닥면적 200㎡ 이상 나.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는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가. 비행기격납고 2. 연면적 800㎡ 이상 가. 주차용 건축물 3. 바닥면적 200㎡ 이상 가.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차고 나.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는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 4. 20대 이상 주차 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5. 바닥면적 300㎡ 이상 가.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이 경우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1995. 8. 10. (1995. 8. 10.)	신설 5. 바닥면적 300㎡ 이상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비행기격납고 2. 연면적 800㎡ 이상 가. 주차용 건축물 3. 바닥면적 200㎡ 이상 가.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차고 나.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는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 4. 20대 이상 주차 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5. 바닥면적 300㎡ 이상 가.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7. 9. 27. (1997. 9. 27.)	개정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가.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가.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는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것 4. 20대 이상 주차 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5.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3. 20. (2001. 5. 21.)	개정 가.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가. 비행기격납고 2. 연면적 800㎡ 이상 가. 주차용 건축물 3.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 나.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 4. 20대 이상 주차 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5. 바닥면적 300㎡ 이상 가.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2. 15. (2008. 8. 16.)	신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길이가 3,000m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길이가 3,000m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 2. 6. (2009. 2. 6.)	신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10. 2. 7. 시행)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길이가 3,000m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2010. 2. 7. 시행) ※ 부칙 : (시행일)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1. 4. 6. (2011. 7. 7.)	개정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길이가 3,000m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2013. 1. 9. (2013. 2. 10.)	개정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2014. 11. 19. (2014. 11. 19.)	개정 8.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장관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2017. 7. 26. (2017. 7. 26.)	개정 8.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청장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2018. 6. 26. (2018. 6. 27.)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639 486 886">개정</td><td data-bbox="491 639 1273 886">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td></tr> </table>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2022. 11. 29. (2022. 12. 1.)	개정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과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2024. 5. 7. (2024. 5. 17.) 현행	개정 8.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제외) 또는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일 (시행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있는 것 5.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제외) 또는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것



7 옥외소화전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1968. 1. 15.) 제정	1. 특수 장소의 건축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하나일 경우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둘 이상인 경우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내화건축물 : 9,000㎡ 이상 나. 방화건축물 : 6,000㎡ 이상 다. 기타건축물 : 3,000㎡ 이상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나. 방화 건축물 → 준내화건축물 1. 특수 장소의 건축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하나일 경우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둘 이상인 경우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내화건축물 : 9,000㎡ 이상 나. 준내화건축물 : 6,000㎡ 이상 다. 기타건축물 : 3,000㎡ 이상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내화구조건축물·방화구조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개정일 (시행일)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층 → 지상 1층 2층 → 지상 2층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상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1995. 8. 10. (1995. 8. 10.)	개정	3. 다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상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다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1997. 9. 27. (1997. 9. 27.)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상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다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일 (시행일)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개정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2009. 2. 6. (2009. 2. 6.)	개정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시행일 : 2010. 2. 7.)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시행일 : 2010. 2. 7.)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1. 4. 6. (2001. 7. 7.)	개정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일 (시행일)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2011. 10. 28. (2012. 2. 5.)	개정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1.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9,000㎡ 이상(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것
2024. 5. 17. (2024. 5. 17.) 현행	개정 2.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8 단독경보형감지기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신 설	1. 아파트 : 연면적 1,000㎡ 미만 2.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4.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5.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2011. 4. 6. (2011. 7. 7.)	개정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5. 청소년시설 → 수련시설 1. 아파트 : 연면적 1,000㎡ 미만 2.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4.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5. 연면적이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2013. 1. 9. (2013. 2. 10.)	신 설 5.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1. 아파트등 : 연면적 1,000㎡ 미만 2.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4.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5.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개정일 (시행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2018. 6. 26. (2018. 6. 27.)	신설	6. 유치원 : 연면적 400㎡ 미만
		1. 아파트등 : 연면적 1,000㎡ 미만 2.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4.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5.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6. 유치원 : 연면적 400㎡ 미만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개정
		5호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3.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9 비상경보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장소 - 제외대상 - 연장 50m 이상의 아케이드 - 산림 - 주차		
1973. 12. 29. (1973. 12. 29.)	<table border="1"> <tr> <td>개정</td><td>설치기준 개정</td></tr> </table> - 비상경보기구(경종, 휴대용확성기, 수동식 사이렌) 설치대상 ※ 2호의 적용받는 것을 제외 다만,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제27조* 또는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 시장, 백화점,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공중목욕탕,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사이렌, 방송설비) 설치대상 ※ 3호의 적용받는 것을 제외 다만,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2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 20인 이상 -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공중목욕탕 - 수용인원 50인 이상의 것 또는 지층이나 무창층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휴양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복합건물등, 중요문화재, 아케이드, 산림 등 - 비상경보설비(방송설비 및 비상벨,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치대상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것 - 가목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이외에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의 것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1)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소방법 시행령 제2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소방법 시행령 제30조4항 ①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1981. 11. 6. (1981. 11. 6.)	<table border="1" data-bbox="386 751 1272 859"> <tr> <th>개정</th><th>설치기준 개정</th></tr> </table> 1. 1종 장소: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 여관, 호텔, 여인숙,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여관, 호텔, 여인숙, 의원원의 경우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2. 2종 장소: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2) 학교, 학예전시관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3. 3종 장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4. 지하가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40인 이상인 것.				
1991. 1. 8. (1991. 1. 8.)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6 566 486 668">개정</th><th data-bbox="494 566 1272 668">설치기준 개정</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678 486 1773"></td><td data-bbox="494 678 1272 1773">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으로서 연면적(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00㎡ 이상인 것 (3)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공중목욕장으로서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학교, 학예전시관으로서 연면적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400㎡(아파트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td></tr> </tbody> </table>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으로서 연면적(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00㎡ 이상인 것 (3)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공중목욕장으로서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학교, 학예전시관으로서 연면적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400㎡(아파트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으로서 연면적(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00㎡ 이상인 것 (3)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공중목욕장으로서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전층 (2) 학교, 학예전시관으로서 연면적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은 전층 (2) 가목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400㎡(아파트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등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나. 비상벨 ·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4. 지하가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계실 · 보일러실 · 전기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500㎡ 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 이상인 것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1997. 9. 27. (1997. 9. 27.)	개정, 신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001. 3. 20. (2001. 5. 21.)	신설 4.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2005.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내용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005. 11. 11. (2005. 11. 11.)	개정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011. 4. 6 (2011. 7. 7.)	개정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개정일 (시행일)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2016. 6. 30. (2016. 7. 1.)	개정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지하가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 이상)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10 자동화재탐지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 문화재 - 연면적 300㎡ 이상 -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장, 집회장,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 연면적 500㎡ 이상 - 요정, 요리점, 음식점,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공중목욕탕, 정치장, 선거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창고, 비행기 격납고 - 연면적 1,000㎡ 이상 - 사찰, 교회,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사업장 - 지정수량 500배 이상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 바닥면적 3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
	개정, 신설 -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 바닥면적 500㎡ 이상 - 통신기기실
1973. 12. 29. (1973. 12. 29.)	-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 연면적 300㎡ 이상 - 공연장, 관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 연면적 500㎡ 이상 - 유형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탕, 정치장·선거, 대합실, 차고, 주차장, 창고 - 연면적 1,000㎡ 이상 - 사찰, 교회, 사업장 - 지정수량 500배 이상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 바닥면적 3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500㎡ 이상 - 통신기기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연면적 600㎡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000㎡ 이상)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다. 바닥면적 300㎡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 라. 바닥면적 5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연면적 1,000㎡ 이상(교회, 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4층 이상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바닥면적 600㎡ 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 이상 라. 바닥면적 5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연면적 1,000㎡ 이상 (1)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바닥면적 600㎡ 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 이상 라. 바닥면적 5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 4. 지하가 가.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984. 6. 30. (1984. 7. 1.)	개정 신설 1. 1종 장소 다. 바닥면적 300㎡ 이상 (2) 소방대상물의 전기설·통신기기설 및 전산기기설 2. 2종 장소 라. 바닥면적 3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전기설·통신기기설 및 전산기기설 3. 3종 장소 라. 바닥면적 3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전기설·통신기기설 및 전산기기설 마. 지하가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연면적 600㎡ 이상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연면적 600㎡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000㎡ 이상)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바닥면적 300㎡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 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 (2) 소방대상물의 전기설·통신기기설 및 전산기기설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연면적 1,000㎡ 이상(교회, 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0㎡ 이상) (1) 정거장, 대합실, 4층 이상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바닥면적 600㎡ 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 이상의 층 라. 바닥면적 3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전기설·통신기기설 및 전산기기설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등 가. 연면적 1,000㎡ 이상 (1)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다. 바닥면적 600㎡ 이상 (1)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 라. 바닥면적 3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 마. 지하가 (1)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연면적 600㎡ 이상 4. 지하가 가.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일반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3. 연면적 2,000㎡ 이상 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종교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 시설, 교정시설 4.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1994. 7. 20. (1994. 7. 20.)	개정 설치기준 개정, 신설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일반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3. 연면적 2,000㎡이상 가.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4.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5. 지하구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내무부령: 지하구는 길이가 50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1995. 8. 10. (1995. 8. 10.)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3. 연면적 2,000㎡이상 가.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4.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5.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997. 9. 27. (1997. 9. 27.)	개정	지하가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 연면적 600㎡ 이상 -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001. 3. 20. (2001. 5. 21.)	개정, 신설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숙박시설, 의료시설 -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 → 아파트 및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 - 연면적 400㎡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4.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5. 지하구 6. 연면적 400㎡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가.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2004. 5. 29. (2004. 5. 29.)	개정, 신설	설치기준 개정, 신설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6.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2011. 4. 6. (2011. 7. 7.)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6.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2011. 10. 28. (2012. 2. 5.)	개정, 신설	3. 연면적 2,000㎡ 이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8. 노유자생활시설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6. 8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8. 노유자생활시설
2014. 7. 7. (2014. 7. 8.)	신설, 개정	1. 의료시설 →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것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 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6. 8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8. 노유자생활시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2014. 10. 8. 시행)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것
	※ 부칙: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2015. 6. 30. (2015. 7. 1.)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6. 8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8. 노유자생활시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2018. 6. 26. (2018. 6. 27.)	신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6. 8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8. 노유자생활시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2021. 8. 24. (2022. 2. 25.)	<table border="1" data-bbox="386 794 1272 904"> <tr> <td data-bbox="386 794 486 904">개정</td><td data-bbox="491 794 1272 904"> 11.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td></tr> </table> 1. 연면적 600㎡ 이상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 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6. 8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7.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	11.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개정	11.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8. 노유자생활시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1.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table border="1" data-bbox="386 852 1276 942"> <tr> <th data-bbox="386 852 486 942">개정</th><th data-bbox="491 852 1276 942">설치기준 개정</th></tr> </table>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4.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5. 연면적 2,0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동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4. 4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1 시각경보기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신 설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3.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지하상가
2006. 12. 7. (2006. 12. 7.)	개정 2. 업무시설 → 업무시설(군사시설 제외)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 제외) 3.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지하상가
2011. 4. 6. (2011. 7. 7.)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개정일 (시행일)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2018. 6. 26. (2018. 6. 27.)	개정 장례식장 → 장례시설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내용 개정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12 화재알림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화재알림설비 설치기준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1.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3 비상방송설비

개정일 (시행일)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992. 7. 28. (1992. 7. 28.)	1. 연면적 3,500㎡ 이상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3. 지하 3층 이상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11층 이상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 1. 연면적 3,500㎡ 이상 2. 11층 이상 3. 지하 3층 이상
1997. 9. 27. (1997. 9. 27.)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연면적 3,500㎡ 이상 2. 11층 이상 3. 지하 3층 이상
2004. 5. 30. (2004. 5. 30.)	개정 2. 11층 이상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연면적 3,500㎡ 이상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3. 지하 3층 이상



개정일 (시행일)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2009. 2. 6. (2009. 2. 6.)	개정	(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 (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 관련시설 제외)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 관련시설 제외) 1. 연면적 3,500㎡ 이상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3. 지하 3층 이상
2011. 4. 6. (2011. 7. 7.)	개정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3. 지하 3층 이상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개정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4 자동화재속보설비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화재속보설비는 다음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00m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면적 500㎡ 이상 -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바, 유키장, 댄스홀, 오락장, 시장 백화점,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농학교, 공장, 작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방송시설장, 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 - 요정, 요리점, 음식점,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발차장, 승강장, 사찰, 교회, 차고, 주차장, 격납고, 창고,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사업장 - 소방관서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 경우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 화재속보설비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때에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973. 12. 29. (1973. 12. 29.)	<table border="1"> <tr> <td>신설</td><td> - 바닥면적 1,500㎡ 이상 - 시장, 백화점, 마켓, 공장, 창고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제1류, 제2류,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td></tr> </table> ○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면적 500㎡ 이상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키장, 댄스홀, 시장, 백화점,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아동복지시설, 양로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 - 음식점, 유흥음식점,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차고, 주차장, 격납고, 창고, 사업장	신설	- 바닥면적 1,500㎡ 이상 - 시장, 백화점, 마켓, 공장, 창고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제1류, 제2류,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신설	- 바닥면적 1,500㎡ 이상 - 시장, 백화점, 마켓, 공장, 창고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제1류, 제2류,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 다음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1,500㎡ 이상 가. 시장, 백화점, 마켓, 공장, 창고 2. 지정수량 1,000배 이상 가. 1류, 2류, 5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 소방관서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 경우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신설	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있고, 상시 감시근무자를 배치 시 제외 3. 바닥면적 1,500㎡ 이상 가.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아케이트
1980. 4. 15. (1980. 4. 15.)	○ 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00㎡ 이상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키장, 댄스홀, 시장, 백화점,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아동복지시설, 양로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문화재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음식점, 유흥음식점,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차고, 주차장, 격납고, 창고, 사업장 ○ 다음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있고, 상시 감시근무자를 배치 시 제외 1. 바닥면적 1,500㎡ 이상 가.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아케이트 2. 지정수량 1,000배 이상 가. 제1류, 제2류, 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 소방관서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 경우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바닥면적 1,500㎡ 이상 가.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의료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바닥면적 1,500㎡ 이상 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1999. 7. 29. (1999. 8.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2.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노유자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2.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노유자시설 3.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	
2009. 2. 6. (2009. 2. 6.)	신설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2010. 2. 7. 시행)
	1.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2.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노유자시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3.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함.)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2010. 2. 7. 시행)	
	※ 부칙: (시행일)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 아목, 같은 란의 제6호 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011. 4. 6. (2011. 7. 7.)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노유자시설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4.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개정	설치기준 개정
2011. 10. 28. (2012. 2. 5.)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014. 7. 7. (2014. 7. 8.)	개정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4.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018. 6. 26. (2018. 6. 27.)	신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2019. 8. 6. (2019. 8. 6.)	개정, 신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9.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2021. 8. 24. (2022. 2. 25.)	개정, 신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2022. 11. 29. (2022. 12. 1.)	개정 설치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2024. 5. 7. (2024. 5. 17.) 현행	개정 4. 문화재 → 문화유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5 통합감시시설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통합감시시설 설치기준
2001. 3. 20. (2001. 5. 21.) 신설	1.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통합감시체계를 구축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2000년 기준) -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02. 12. 26. (2003. 1. 1.)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통합감시 체계를 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2003년 기준) -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04. 5. 30. (2004. 5. 29.)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화재안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체계를 설치
2014. 7. 7. (2014. 7. 8.) 현행과 동일	개정 가. 지하구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구(2014. 10. 8. 시행)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누전경보기

개정일 (시행일)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1. 문화재 2. 연면적 150㎡ 이상 가.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공중목욕장 3. 연면적 300㎡ 이상 가.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요정, 요리점, 음식점, 시장 또는 백화점,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농학교 4. 연면적 500㎡ 이상 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정차장, 발착장, 승강장, 사찰, 교회 5. 연면적 1,000㎡ 이상 가. 창고, 관공서, 회사, 은행, 사업장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중요문화재 2. 연면적 150㎡ 이상 가.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공중목욕장 3. 연면적 300㎡ 이상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시장, 백화점,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4. 연면적 500㎡ 이상 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5. 연면적 1,000㎡ 이상 가. 창고, 사업장 6. 최대계약 전류 100A 초과하는 것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맹·농학교, 사업장	



개정일 (시행일)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300㎡ 이상인 것 또는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2. 2종 장소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500㎡ 이상인 것(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 이상) 또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것(4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 한한다)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3. 3종 장소 (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1,000㎡ 이상 (1) 창고 등
1991. 1. 8. (1991. 1. 8.)	개정 4층 이상의 공동주택 → 아파트
	1. 1종 장소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300㎡ 이상인 것 또는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2. 2종 장소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500㎡ 이상인 것(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 이상) 또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것(4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 한한다) (1)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강습소,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개정일 (시행일)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3. 3층 장소 (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1,000㎡ 이상 (1) 창고 등 * 아파트: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1991년 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중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개정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 →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500㎡ 이상(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개정일 (시행일)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997. 9. 27. (1997. 9. 27.)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500㎡이상(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은 연면적 1,000㎡이상)인 것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1999. 7. 29. (1999. 8. 6.)	개정 1. 삭제<1999. 7. 29.>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1999. 7. 29.>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것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6. (2011. 7. 7.) 현행과 동일	개정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가스누설경보기

개정일 (시행일)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신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2011. 4. 6. (2011. 7. 7.)	개정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2018. 6. 26. (2018. 6. 27.)	개정 2. 장례식장 → 장례시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18 피난기구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피난기구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1. 피난층, 11층 이상 층은 제외 2.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30명 이상 가.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농학교 등 3.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50명 이상(내화구조의 2층 제외) 가.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요정, 요리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발착장, 승강장 등 4. 3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층 이상의 무창층이나 지층에 있어서는 100명 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명 이상의 것. 가. 공장, 작업장, 영화 텔레비전 방송시설장, 관공서, 회사, 은행, 사업장 등
	개정 설치기준 개정 소방대상물의 층(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20인 이상(하층에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주차장, 창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수용인원 : 10인 이상 가.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2.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30인 이상(하층에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주차장, 창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수용인원 : 10인 이상 가.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3.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50인 이상 (내화구조는 2층 제외)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4. 3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층 이상의 무창층이나 지층에 있어서는 100명 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명 이상의 것. 가.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1973. 12. 29. (1973. 12. 29.)	

개정일 (시행일)	피난기구 설치기준
1980. 4. 15. (1980. 4. 15.)	개정 소방대상물의 층(피난층 및 18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0. 1. 1. 시행)
	소방대상물의 층(피난층 및 18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0. 1. 1. 시행)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20인 이상(하층에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주차장, 창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수용인원 : 10인 이상 가.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30인 이상(하층에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주차장, 창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수용인원 : 10인 이상 가.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 50인 이상 (내화구조는 2층 제외)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3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층 이상의 무창층이나 지층에 있어서는 100명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명 이상의 것. 가.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것 가. 의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여관, 호텔, 여인숙 및 기숙사, 4층이상의 공동주택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및 시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 -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 ·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가.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및 사업장



개정일 (시행일)	피난기구 설치기준	
1984. 6. 30. (1984. 7. 1.)	개정	다만,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호텔, 여관, 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다만,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호텔, 여관, 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것 가.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여관, 호텔, 여인숙 및 기숙사, 4층이상의 공동주택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및 시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 -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가.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및 사업장
1990. 6. 29. (1990. 7. 1.)	개정	의료원 → 의료기관 2.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강습소 3.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중목욕장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다만,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호텔, 여관, 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것 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여관, 호텔, 여인숙 및 기숙사, 4층이상의 공동주택, 강습소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및 시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 공중목욕장 -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가.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및 사업장

개정일 (시행일)	피난기구 설치기준
1990. 12. 1. (1990. 12. 1.)	개정 심신장애자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다만,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호텔, 여관, 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것 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치원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여관, 호텔, 여인숙 및 기숙사,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강습소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및 시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 공중목욕장 -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가.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및 사업장
1991. 1. 8. (1991. 1. 8.)	개정 가. 4층 이상의 공동주택 → 아파트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것 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치원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것 가. 여관, 호텔, 여인숙 및 기숙사, 아파트, 강습소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것 가.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및 시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 공중목욕장 -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것 가.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및 사업장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지하층, 11층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



개정일 (시행일)	피난기구 설치기준
1994. 7. 20. (1994. 7. 20.)	개정 1. (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 1.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
1997. 9. 27. (1997. 9. 27.)	개정 1. (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 →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은 제외) 1.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 1층, 2층, 11층 이상인 층과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터널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2006. 12. 7. (2006. 12. 7.)	개정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1층, 2층, 11층 이상인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터널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
2017. 1. 26. (2017. 1. 28.) 현행과 동일	개정 1. 지상 2층 →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인명구조기구

개정일 (시행일)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980. 4.15. (신설)	1. 수용인원 200인 이상 가. 7층 이상 관광호텔 나. 5층 이상 병원
1981. 11. 6. (1981. 11. 6.)	개정 ~층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 수용인원 200인 이상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 관광호텔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 병원
1992. 7. 28. (1992. 7. 28.)	개정 수용인원 삭제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 관광호텔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 병원
1994. 7. 20. (1994. 7. 20.)	개정 지하층을 제외한 → 층수가 ~층 이상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1. 층수가 7층 이상 관광호텔 2. 층수가 5층 이상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이상인 5층 이상인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3.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가. 수용인원 100인 이상(층마다 2대 이상) (1)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개정일 (시행일)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2005. 11. 11. (2005. 11. 11.)	개정 대형점 → 전문점, 할인점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3.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가. 수용인원 100인 이상(층마다 2대 이상) (1)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2006. 12. 7. (2006. 12. 7.)	개정 공기호흡기 →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3.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 제외) 가. 수용인원 100인 이상(층마다 2대 이상) (1)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2011. 10. 28. (2012. 2. 5.)	개정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 제외) → 공기호흡기(충전기 제외)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층 마다 2대 이상 비치. 다만,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에 비치할 수 있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5층 이상인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3.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제외)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 마다 2대 이상 비치. 다만,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일 (시행일)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2014. 7. 7. (2014. 7. 8.)	개정	설치기준 개정
		-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1. 26. (2017. 1. 28.)	개정	방열복 → 방열복 또는 방화복
		-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 6. 26. (2018. 6. 27.)	개정	방열복 또는 방화복 →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개정일 (시행일)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철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1. 1. 5. (2021. 1. 5.)	개정 안전헬멧 → 안전모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철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관광호텔, 병원 → 관광호텔,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개정일 (시행일)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철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 유도등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1. 피난구 유도등, 유도표지 가. 지하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1)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료소, 요양소, 조산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농학교, 요정, 요리점, 음식점,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학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공중목욕장, 정거장, 발착장, 승강장, 공장, 작업장, 영화 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방송시설장, 창고, 사찰, 교회,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사업장 등 2. 통로유도등 가. 지하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주간에만 사용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채광이 충분한 곳은 제외) (1)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바, 오락장, 댄스홀, 요정, 요리점, 음식점,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서상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선박 및 항공기 발착장, 사찰, 교회, 공장, 작업장, 영화촬영소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 및 방송시설장, 창고, 창고, 항공기 격납고, 창고,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사업장 등 3. 객석유도등 가. 지하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1)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1973. 12. 29. (1973. 12. 29.)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th><th>설치기준 개정</th></tr> </thead> <tbody> <tr> <td>1.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 (1)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등 나. 소방대상물 (1)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휴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td><td></td></tr> </tbody> </table>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 (1)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등 나. 소방대상물 (1)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휴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 (1)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정차장,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등 나. 소방대상물 (1)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휴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2. 객석유도등 가.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3. 유도표지 가. 모든 소방대상물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 1종 장소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층)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기타의 층에는 유도표지) (1) 기숙사 나.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1) 공연장, 집회장, 경기장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공중목욕장, 유치원 ○ 2종 장소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층)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기타의 층에는 유도표지) (1)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사업장 ○ 3종 장소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층, 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가. 창고, 차고, 비행기격납고 ○ 지하가 1.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
1984. 6. 30. (1984. 7. 1.)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통로 유도등, 객석유도등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흥음식점 나.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시장, 호텔, 종합병원, 특수목욕장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다.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전문음식점, 다방, 여관, 기숙사 및 병원, 가,나목 외의 1종장소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이상 라. 소형피난구유도등(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과자점, 여인숙, 의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마.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1) 기타의 1종장소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정거장, 대합실, 학예전시관,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가목외의 2종장소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 다. 소형피난구유도등(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사업장, 교회, 사찰 라.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1) 기타의 제2종장소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가.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1) 지하층,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층 (2)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 4. 지하가 가. 대형 피난 구 유도 등 (또는 대형 발 광 유 도 표 지) 및 통로 유도 등 은 모든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
1990. 6. 29. (1990. 7. 1.)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장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유도등 (1)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유흥음식점 나.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시장, 호텔, 종합병원, 특수목욕장 다.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다방, 여관, 기숙사, 병원, 가,나목 외의 1종장소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이상 라.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과자점, 여인숙, 의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마.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 (1). 기타의 1종장소 바.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정거장, 대합실, 학예전시관,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나.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강습소, 가목외의 2종장소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 다.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사업장, 교회, 사찰 라.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 (1) 기타의 2종장소 마.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3종 장소 :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가.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다만,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층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층 (2)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 4. 지하가 가.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 다만, 대형피난구유도등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4조 (1990. 6. 29. 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당해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중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가. 모든 소방대상물 2. 객석유도등 가. 무도유흥음식점, 관람집회, 운동시설
1994. 7. 20. (1994. 7. 20.)	신설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가. 모든 소방대상물 2. 객석유도등 가. 무도유흥음식점, 관람집회, 운동시설
1997. 9. 27. (1997. 9. 27.)	개정	가. 모든 소방대상물 →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가.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2. 객석유도등 가. 무도유흥음식점, 관람집회, 운동시설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2. 객석유도등 가. 유흥주점영업(손님이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 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함.)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2014. 7. 7. (2014. 7. 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 10. (2020. 12. 10.)	개정 1. 터널 및 지하구 → 터널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신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개정일 (시행일)	유도등 설치기준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

21 비상조명등

개정일 (시행일)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984. 6. 30. (신설)	1. 1종 장소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원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장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등 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경기장, 기숙사 및 의원원의 거실 제외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것은 해당층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통로 2. 2종 장소 : 정거장, 대합실, 교회,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1)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학교 및 공동주택의 거실 제외 3. 지하가 가. 연면적 1,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개정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 층수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 주차장,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 주차장,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비슷한 것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일 (시행일)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가.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나.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무부령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1997. 9. 27. (1997. 9. 27.)	신설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 주차장,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2004. 5. 29. (2004. 5. 30.)	개정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가. 지하층을 제외 → 지하층을 포함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011. 4. 6. (2011. 7. 7.)	개정	1.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2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2002. 3. 30. (2002. 3. 30.) 신설	1. 숙박시설(오피스텔 제외)	
2004. 5. 29. (2004. 5. 30.)	신설,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2005. 11. 11. (2005. 11. 11.)	개정	2. 대형점 → 전문점, 할인점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영화상영관	
2011. 4. 6. (2011. 7. 7.) 현행과 동일	개정	2.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3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개정일 (시행일)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소방대상물* :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요정, 요리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서상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발착장, 사찰, 교회, 공장, 영화촬영소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 및 방송시설장,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관공서, 회사, 은행, 사업장,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1.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20,000㎡ 이상이고, 또한 그 바닥면적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 이상, 난연성 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 이상,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 2.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 높이가 35m 이상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 25,000㎡ 이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 1 (1968. 1. 15. 기준)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설치기준 개정 소방대상물* : 공연장, 집회장,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복합건물,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1. 대지면적 20,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가.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 이상 나.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 이상 다.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이상 2. 소방대상물중 그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지층을 제외한다)이 25,000㎡ 이상의 것 *소방법 시행령 별표 1 (1973. 12. 29. 기준)



개정일 (시행일)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소방대상물*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 1. 대지면적이 20,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5,000㎡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2층에 있어서는 5m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5,000㎡ 이상인 것 *소방법 시행령 별표 1 (1973. 12. 29. 기준)
1984. 6. 30. (1984. 7. 1.)	개정, 신설	1. 대지면적 20,000㎡ 이상이고 바닥면적이(지층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층인 경우 1층의 바닥면적, 2층 이상인 경우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인 건축물(1985. 7. 1.)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비상급수시설이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적합 시 소화수조, 저수조로 같음) 3.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 (1985. 7. 1.)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방대상물*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강습소,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 1. 대지면적 20,000㎡ 이상이고 바닥면적이(지층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층인 경우 1층의 바닥면적, 2층 이상인 경우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인 건축물 (1985. 7. 1.)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비상급수시설이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적합 시 소화수조, 저수조로 같음)

개정일 (시행일)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2.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5,000㎡ 이상인 것 3.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 (1985. 7. 1.)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법 시행령 별표 1(1984. 6. 30. 기준) * 부칙 : (시행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제17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
1991. 1. 8. (1991. 1. 8.)	개정	2.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소방대상물*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학교, 강습소,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등 1. 대지면적 20,000㎡ 이상이고 바닥면적이(지층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층인 경우 1층의 바닥면적, 2층 이상인 경우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인 건축물.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2층에 있어서는 5m 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비상급수시설이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적합 시 소화수조, 저수조로 같음)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0㎡ 이상 3.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방법 시행령 별표 1(1991. 1. 8. 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특수장소를 종전에는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정함 1. 연면적 5,000㎡ 이상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로 같음할 수 있다.



개정일 (시행일)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가.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m 이하, 2층에 있어서는 5m 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1994. 7. 20. (1994. 7. 20.)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591 486 703">개정</td><td data-bbox="494 591 1272 703">설치기준 개정</td></tr> </table>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2.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아파트 및 가스시설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 *내무부령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1994. 7. 20. 기준)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개정	설치기준 개정		
1997. 9. 27. (1997. 9. 27.)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6 1242 486 1354">개정</td><td data-bbox="494 1242 1272 1354">가.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td></tr> </table>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 또는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2. 소화수조는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아파트 및 가스시설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가.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개정	가.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		

개정일 (시행일)	소화수조 및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 (다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함.) 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 100톤 이상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신설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 (다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함.) 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 100톤 이상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4 제연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연혁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1968. 1. 15.) 제정	1.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극장, 영화관,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의 무대부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 가.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백화점, 시장,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1973. 12. 29. (1973. 12. 29.)	개정 가. 집회장 : 200㎡ → 1,000㎡ 1.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공연장, 관람장의 무대부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 가. 집회장 , 카바레, 유기장, 댄스홀, 백화점, 시장,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정차장, 대합실
1981. 11. 6. (1981. 11. 6.)	신설, 개정 2.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가.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정거장, 대합실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1. 바닥면적이 200㎡ 이상 가. 공연장, 집회장의 무대부 2.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가.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정거장, 대합실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관람집회, 운동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가. 근린생활,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4.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1995. 8. 10. (1995. 8. 10.)	개정 4. 특수장소 → 특수장소(갯복도형 아파트 제외) 1.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관람집회, 운동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가. 근린생활,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4. 특수장소(갯복도형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1997. 9. 27. (1997. 9. 27.)	개정 3. 연면적 1,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1,000m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1.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가. 관람집회, 운동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가. 근린생활,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1,000m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4. 특수장소(갯복도형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2.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가. 문화집회, 영화상영관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가. 판매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5.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6. 1,000m 이상인 것 가. 지하가 중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008. 2. 15. (2008. 8. 16.)	개정 6. 500m 이상인 것 가.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1.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2.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가. 문화집회, 영화상영관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가. 판매시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5.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6. 지하가 중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2012. 9. 14. (2012. 9. 14.)	개정	설치기준 개정
		-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가 중 길이가 500m 이상 가.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013. 1. 9. (2013. 2. 10.)	개정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가.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가.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5.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015. 1. 6. (2015. 1. 8.)	<table border="1" data-bbox="386 794 1272 915"> <tr> <td data-bbox="386 794 486 915">개정</td><td data-bbox="491 794 1272 915"> 3.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015. 4. 8. 시행) </td></tr> </table> 1.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3.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가.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5.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3.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015. 4. 8. 시행)
개정	3.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015. 4. 8. 시행)		

개정일 (시행일)	제연설비 설치기준	
2020. 9. 15. (2020. 9. 15.) 현행과 동일	개정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2021. 3. 15. 시행)
		-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이상 가.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2021. 3. 15. 시행)



25 연결송수관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소방대상물* : 극장,영화관,관람장,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요정, 요리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서상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발착장, 사찰, 교회, 공장, 영화촬영소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 및 방송시설장,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관공서, 회사, 은행, 사업장,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 -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1호에 계기한 것 외에 지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 연장 50m 이상의 아케이트 *소방법시행령 별표1 (1968. 1. 15. 기준)
1976. 3. 27. (1976. 3. 27.)	개정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의 것, 다만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로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소방대상물* : 공연장, 집회장,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복합건물,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의 것, 다만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로서 10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5층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 연장 50m 이상의 아케이트 *소방법시행령 별표1 (1976. 3. 27. 기준)

개정일 (시행일)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소방대상물*: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의 것, 다만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로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2. 1호에 계기한 것 외에 지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3.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소방법시행령 별표1 (1981. 11. 6. 기준)	
1991. 1. 8. (1991. 1. 8.)	개정	3. 지하가 설치의무 면제
	소방대상물*: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탕,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아파트,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지정문화재, 복합건축물 등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의 것, 다만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로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2. 1호에 계기한 것 외에 지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소방법시행령 별표1 (1991. 1. 8. 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6,000㎡ 이상 2. 지하층 3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	



개정일 (시행일)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1994. 7. 20. (1994. 7. 20.)	개정	설치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1997. 9. 27. (1997. 9. 27.)	신설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
2004. 5. 29. (2004. 5. 30.)	개정	2. 층수 → 지하층을 포함 하는 층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 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

개정일 (시행일)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2008. 2. 15. (2008. 8. 16.)	개정 4. 터널 길이 2,000m → 1,000m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 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26 연결살수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1973. 12. 29. 신설	소방대상물* : 공연장, 집회장,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복합건물,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1. 지하층의 바닥면적 700㎡ 이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1 (1973. 12. 29. 기준)
1980. 4. 15. (1980. 4. 15.)	개정 1. 지하층 → 지하층 또는 지하가 소방대상물* : 공연장, 집회장, 유기장, 댄스홀, 유흥음식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의원, 조산소,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중목욕장, 정차장, 선거, 대합실, 사찰, 교회,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창고, 사업장, 복합건물,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1. 지하층 또는 지하가의 연면적 700㎡ 이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1 (1980. 4. 15. 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설치기준 개정 소방대상물*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격납고, 문화재,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 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

개정일 (시행일)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가.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 이하인 부분 나. 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다.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통신기기실·전자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라. 발전실·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마. 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바.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2. 연면적 700㎡ 이상인 지하가 *소방법 시행령 별표1 (1981. 11. 6. 기준)
1990. 6. 29. (1990. 7. 1.)	개정 1.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이상 →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 가. 삭제<1990. 6. 29.> 소방대상물* : 공연장, 경기장, 집회장, 음식점, 유기장, 시장, 여관, 호텔, 여인숙, 기숙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유치원, 공중목욕장,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시관, 강습소, 사업장,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창고, 차고, 비행기 격납고, 문화재,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 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 가. 삭제<1990. 6. 29.> 나. 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다.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통신기기실·전자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라. 발전실·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마. 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바.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2. 연면적 150㎡ 이상인 지하가 *소방법 시행령 별표1 (1990. 7. 1. 기준)



개정일 (시행일)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1호 및 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통신기기실, 승강기의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다クト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가. 판매시설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개정	1호 및 2호 → 지하구를 제외하며, 1호 및 2호 기계실 →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1호 및 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등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1호 및 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통신기기실, 승강기의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다クト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가. 판매시설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1호 및 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등
2004. 5. 29. (2004. 5. 30.)	개정	설치기준 개정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1호 및 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개정일 (시행일)	연결살수설비 설치기준
2011. 4. 6. (2011. 7. 7.)	개정 1.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호 및 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011. 10. 28. (2012. 2. 5.)	개정 2. 지하층 →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호 및 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2. 150㎡ 이상인 것 →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이상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호 및 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7 비상콘센트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
1968. 1. 15. (제정)	소방대상물* : 극장,영화관,관람장,공회당, 집회장, 카바레, 바, 유기장, 댄스홀, 오락장, 요정, 요리점, 음식점,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숙박소,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병원, 진료소, 요양소, 서상원,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양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맹학교, 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각종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중목욕탕, 정거장, 발착장, 사찰, 교회, 공장, 영화촬영소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 및 방송시설장,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관공서, 회사, 은행, 사업장, 문화재, 아케이트, 산림 등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1 (1968. 1. 15. 기준)
1981. 11. 6. (1981. 11. 6.)	개정 2. 지하가 가. 연면적 1,000㎡ 이상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1992. 7. 28. (1992. 7. 28.)	개정 설치기준 개정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1994. 7. 20. (1994. 7. 20.)	개정 설치기준 개정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개정일 (시행일)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	
1997. 9. 27. (1997. 9. 27.)	신설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2004. 5. 29. (2004. 5. 30.)	개정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014. 7. 7. (2014. 7. 8.) 현행과 동일	개정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014. 10. 8. 시행)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부칙 :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무선통신보조설비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1981. 11. 6. (1981. 11. 6.) 신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1992. 7. 28. (1992. 7. 28.)	신설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1994. 7. 20. (1994. 7. 20.)	신설, 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인상인 것 →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1997. 9. 27. (1997. 9. 27.)	신설	1. 지하가 → 지하가(터널 제외)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개정일 (시행일)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2001. 3. 20. (2001. 5. 21.)	개정, 신설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 가스시설 4. 지하구로서 공동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4. 지하구로서 공동구
2011. 10. 28. (2012. 2. 5.)	신설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4. 지하구로서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
2022. 11. 29. (2022. 12. 1.) 현행과 동일	개정	설치기준 내용 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 가. 지하가(터널 제외)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4. 지하구로서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층



29 연소방지설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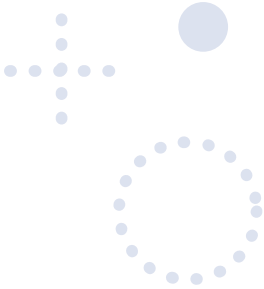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연소방지설비 설치기준
1994. 7. 20. (1994. 7. 20.) 신 설	1. 연소방지설비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 * 내무부령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1999. 7. 29. (1999. 8. 6.)	1. 연소방지설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 * 행정자치부령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2001. 3. 20. (2001. 5. 21.)	개정 1.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 1.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 * 행정자치부령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화벽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발생시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하구를 제외
2004. 5. 29. (2004. 5. 30.)	개정 지하구 →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 1.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5. 1. 6. (2015. 1. 8.) 현행과 동일	개정 1.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만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만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1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주요 개정 시행령·규칙

1-1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개정

구분	현행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업종별	전문 / 일반 구분 없음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영업 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술 인력	주된 기술 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 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구 분	개정 전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관 련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관 련 내 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 <~ 생략>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 법 제61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행 정 처 분	적용사항 없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table border="1"><tr><th colspan="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th></tr><tr><th>구분</th><th>1차위반</th><th>2차위반</th><th>3차위반</th></tr><tr><td>영업정지</td><td>1개월</td><td>3개월</td><td>등록취소</td></tr></tabl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구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구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과 태 료	적용사항 없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1
2024 소방시설 등
주요 개정 시행·규칙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참고사항]

구분	1. 기술자력에 따른 기술등급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보조 기술 인력	구분	기술자격
	특급점검자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점검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점검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점검자	1)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구분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보조 기술 인력	구분	학력·경력자	경력자
	고급점검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점검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점검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1)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3년 이상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1-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개정

구 분	현행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관 련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점검 1단위당 점검한도 면적 (아파트 세대수)	종합	10,000㎡ (300세대)	종합	8,000㎡ (250세대)
	작동	12,000㎡ (350세대)	작동	10,000㎡ (250세대)
보조인력 추가면적 (아파트 세대수)	종합	3,000㎡ (70세대)	종합	2,000㎡ (60세대)
	작동	3,500㎡ (90세대)	작동	2,500㎡ (60세대)
1일 점검 한도면적 (2개이상 특정 대상물)	1일 점검한도면적 기준 없음		투입 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 면적의 평균값	
가 감 계 수	1류(1.2)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류(1.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2류(1.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판매시설		
	3류(1.0)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2류(1.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4류(0.9)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5류(0.8)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3류(0.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구 분	현행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거리 계산 (2개 이상의 대상물)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설비유무까지 계산된 값에 0.02를 곱한값을 더한다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 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설비유무 감소계수 (설비가 없는 경우)	제연설비	0.1	제연설비	0.1	
	스프링클러	0.1	스프링클러	0.1	
	물분무등소화설비	0.15	물분무등소화설비	0.1	
점검자 등급별 배치 기준	구분 없음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관리사경력 5년 이상 1명이상	고급이상, 중급이상 각 1명 이상
			나.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 (단, 가목의 대상물 제외)	소방시설 관리사경력 3년 이상 1명이상	고급이상, 초급이상 각 1명 이상
			다. 1,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시설 관리사 1명이상	중급이상, 초급이상 각 1명 이상
			라. 3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시설 관리사 1명이상	초급이상 2명 이상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 배치가가능		
1일 배치 대상물 수	1일 점검가능 대상물 수 제한 없음		1일 점검가능 대상물 수 최대 5개 로 제한		

1-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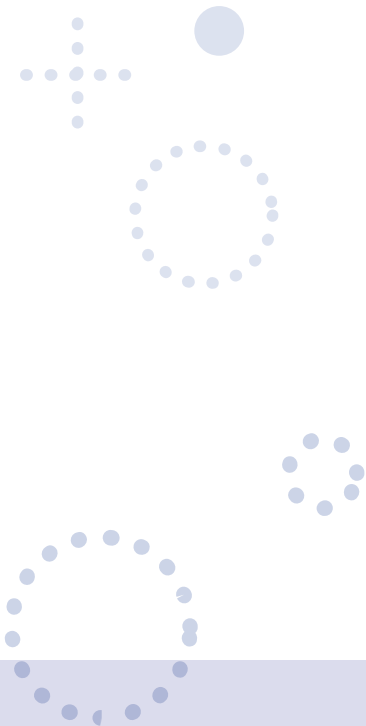
구 분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관 련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대 행 인 력 배 치 등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설비 포함)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스프링클러설비(5,000㎡미만)	초급점검자 1명이상 ※ 단,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1일 한 도 점 수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표)에 따라 산정하며, 1일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면적별 배점(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세대)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전체)	0.7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30세대 미만)	0.8 (0.8)	0.7 (0.7)	0.6 (0.6)



구 분	개정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면적별 배점(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세대)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1급 또는 2급	1,500㎡ 이상 3,000㎡ 미만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0 (1.0)	0.8 (0.8)	0.7 (0.7)
		3,000㎡ 이상 5,000㎡ 미만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2 (1.2)	1.0 (1.0)	0.8 (0.8)
		5,000㎡ 이상 10,000㎡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9 (1.9)	1.3 (1.3)	1.1 (1.1)
		10,000㎡ 초과 15,000㎡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1.6)	1.4 (1.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	(1.8)
		(1,000세대 초과)	-	(2.3)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배점에 10% 할증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15,000㎡로 본다				
거리 계산 (2개 이상의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 5km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 한다				

0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I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6, 7547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자체점검, 관리업) 044-205-7553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④ 관리업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또는 점검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자체점검은 할 수 있다.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절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신청·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제52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관리업자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16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Ⅰ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6,7547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자체점검, 관리업) 044-205-7553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火)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2. 「건축법」 제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말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상촬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가(地下街)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임·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신제품의 조사·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방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라. 전사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마.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2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 · 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 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 목재류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 · 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위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과목
 -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6장 보칙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 검사(제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2. 삭제 <2023. 3. 7.>
3.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6.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②⁸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I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시설 (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 자동식사이렌설비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라. 시각경보기
- 마. 화재알림설비
- 바. 비상방송설비
-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 아. 통합감시시설
- 자. 누전경보기
- 차. 가스누설경보기
-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간이완강기
 -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 다. 유도등
 - 1) 피난유도선
 - 2) 피난구유도등
 - 3) 통로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5) 유도표지
 -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제연설비
 - 나. 연결송수관설비
 - 다. 연결살수설비
 - 라. 비상콘센트설비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연소방지설비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Ⅰ

<개정 2024. 5. 7>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어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물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기획 중 일부의 기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다. 세차장
- 라. 폐차장
- 마. 자동차 검사장
- 바. 자동차 매매장
- 사. 자동차 정비공장
-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은 제외한다)
-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21.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나. 보호관찰소, 갇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생 · 보호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치료감호시설
 -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사. 국방 ·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22.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차량(레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I

소방용품 (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管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Ⅰ

<개정 2024. 5. 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 3) 터널
-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동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11) 지하구
-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멀티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측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아.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자.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벽 또는 방화벽(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7) 특정소방대상물(갯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승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4) 지하구 중 공동구



-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비고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2.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및 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I

<개정 2024. 5.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유산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7.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9.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 · 수신 · 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0. 화재알림설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3.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피난구조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7.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제연구역(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19.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0.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Ⅰ

<개정 2024. 5.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I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 로 나누어 얻은 수
-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 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 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I

[시행일: 2023. 7. 1.] 제1호라목, 제1호바목, 제1호사목, 제2호라목, 제2호바목, 제2호사목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 용접 · 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 용접 ·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I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45조제1항 관련)

업종별	기술인력 등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I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5호	300		
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6호	300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7호	3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8호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9호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0호	100	200	300
카.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1호			
1)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		
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2호	300		
파.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3호	300		
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4호	300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5호	50	100	300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Ⅰ

[시행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6,7547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자체점검, 관리업) 044-205-75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건축물 설계도서
 -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 3) 실내장식을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방화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 3)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 다.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평가단장은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경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방기술사
 - 나. 소방시설관리사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분야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기술사
 - 라. 소방시설관리사
 - 마.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④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한 평가단원 중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되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 방법 등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동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와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영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도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④ 시·도시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행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다. 특허증 사본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 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실적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와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2년 12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2년 12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022년 12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2022년 12월 1일
5.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2월 1일

부칙 <제397호, 2023. 4. 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I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 · 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 (제5조제5항 관련)

구 분		성 립 요 건	통보 시기
수리	원안 채택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지체 없이
	보완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 · 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보완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불수리	재검토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 · 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부결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 · 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가) 관계인
 -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상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I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 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비고

1.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1.1
2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1.0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0.9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I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제25조 관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대상물명 :									
•주 소 :									
•점검구분 :	☐ 작동점검				☐ 종합점검				
•점 검 자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불량사항 :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기타설비		☐ 없음		
•정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게시합니다.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제28조 관련)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연소 및 연소현상
	화재현상	화재 및 화재현상
		건축물의 화재현상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유체의 기본적 성질
		유체정역학
		유체유동의 해석
		관내의 유동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소방 관련 열역학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상태변화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열전달 기초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조기진압형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직류회로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교류회로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계측
	제어회로	자동제어의 기초
		시퀀스 제어회로
		제어기기 및 응용
	전자회로	전자회로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고 1.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제2차시험 과목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대상물 분석하기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소방시설 점검	현황자료 검토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관련 서류의 작성	소방계획서의 작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영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I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text{점검능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기술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점검실적액} + \text{연평균대행실적액}) \times 50/100$$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체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기술력평가액} = \text{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times \text{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times 40/100$$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양도·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양도신고서·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관리사 (경력 5년이상)	관리사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
가중치	3.5	3.0	2.5	2	1.5	1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times \text{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times 10/100$$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관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0.5	0.55	0.6	0.65	0.7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0.75	0.8	0.85	0.9	0.95	1.0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기술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점검능력평가액} = (\text{전년도 전체 평가업체의 평균 실적액} \times 10/100) + (\text{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액} \times \text{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계} \times 50/100)$$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Ⅰ

<개정 2023. 4. 19.>

행정처분 기준 (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I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1	10 이하	25,000
2	10 초과 ~ 30 이하	30,000
3	30 초과 ~ 50 이하	35,000
4	50 초과 ~ 100 이하	45,000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5	100 초과 ~ 150 이하	50,000
6	150 초과 ~ 200 이하	55,000
7	200 초과 ~ 250 이하	65,000
8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9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10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11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12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13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14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15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6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7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8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9	10,000 초과	330,000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I

수수료 (제41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금액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제1차시험 2) 제2차시험	1만8천원 3만3천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만원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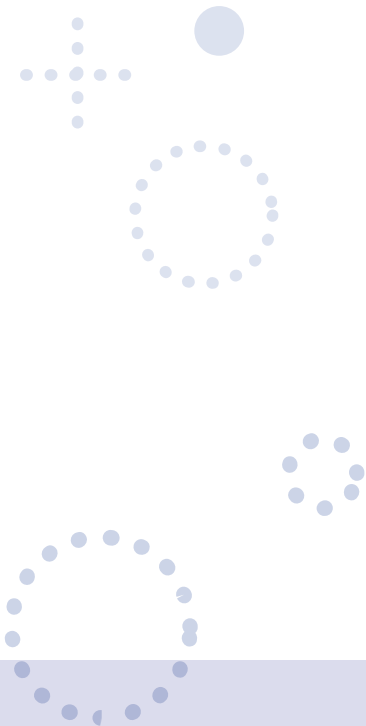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목록표

- [서식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 [서식2]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 [서식3]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
- [서식4]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 [서식5]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 [서식6]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
- [서식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서식8]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9]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서식1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서식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서식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서식1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14] 소방시설관리사증
- [서식15]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
- [서식16]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17]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서식18]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서식19] 경력·재직증명서
- [서식20]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서식21] 소방기술인력대장
- [서식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 [서식2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서식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 [서식2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서식2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27]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 [서식28]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
- [서식29]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 [서식30]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 [서식31]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 [서식32]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 [서식33]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 [서식34]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 [서식35]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서식36]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0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I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소방청(화재대응조사와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분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의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①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취소 처분 현황
6.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③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7.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제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 생략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Ⅰ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시기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현황
 5.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성별·연령별 지원 현황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
 10.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
 1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또는 자체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
 - 다.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유킨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킨 물건 등(이하 “유킨물건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유킨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유킨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유킨물건등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유킨물건등을 제3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물건·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6. 노(爐)·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 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 · 냉장창고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 ·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 · 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 ·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9조(불시 소방훈련·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향만시설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13.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선임인원: 2022년 12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2022년 12월 1일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제344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5)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생략

제5조 생략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I

<개정 2024. 5. 7.>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구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구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 12) 역 · 터미널

3. 건조설비

- 가. 건조설비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 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 · 전기시설

-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 · 화덕설비

-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 · 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주방설비에 부착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Ⅰ

특수가연물 (제19조제1항 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벚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 · 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 · 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벚짚류”란 마른 벚짚 · 복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용점)이 100도 미만인 것
 -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뭇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엉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I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 · 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 · 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 · 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m ³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연락처

-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Ⅰ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지하구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I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I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I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 (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3) 전기안전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가스기술사·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
소방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가스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분야	자격 요건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는 것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I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300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I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1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통계의 작성·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사본

3.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3일 이내에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을 종합정보망에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응시자격 증명서류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점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채점은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1. 선택형 문제: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

2. 주관식 서술형 문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시험위원이 채점.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한다.



-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6. 그 밖에 화재안전 또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시험장 안이나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일정·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경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일정·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경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정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 · 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 · 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 · 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 · 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 · 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 화재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5.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화재 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 ②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361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시간·운영 방법 및 교육비 납부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시간·운영 방법 및 교육비 납부는 별표 5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중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제2호·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2)·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5,000㎡ 미만	1.2	1.0	0.8
	5,000㎡ 이상 10,000㎡ 이하	1.9	1.3	1.1
	10,000㎡ 초과 15,000㎡ 이하	-	1.6	1.4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0	0.8	0.7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2	1.0	0.8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9	1.3	1.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1.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	1.8
	1,000세대 초과	-	2.3	2.1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관계인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대행인력 : (서명)

비고

-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제15조제2항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I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제23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1차 시험	제1 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0문항	선택형	120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제2 과목	소방기초이론	50문항		
		연소·방화·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구분	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2차 시험	제1 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50문항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90분
	제2 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0문항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 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공공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 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 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 · 실습 · 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2과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 실습 · 평가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 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 관계 법령	25문항	선택형 (기입 형 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 · 실습 · 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I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160시간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 · 실습 · 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 실습 · 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 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 유지 실습 · 평가	
	형성평가(시험)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형성평가(시험)	24시간
	소방 관계 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마. 영 제40조의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형성평가(수료)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16시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실습·평가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16시간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 평가	
	형성평가(수료)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 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 · 실습 · 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 · 운영 이론 · 실습 · 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 · 실습 · 평가	
	응급처치 이론 · 실습 · 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30%)	실습 및 평가(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I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 수행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3. 교육운영 방법

가. 실무교육은 이론·실습 또는 실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I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제43조 관련)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소방	1)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2) 저울 3) 소화전밸브압력계 4) 헤드결합렌치 5)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6) 열감지시험기, 연(煙)감지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7)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8) 무선기(통화시험용) 9)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0)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11)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2)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3)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4) 교육·훈련 평가 기자재 가) 연기발생기 나) 초시계
전기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3) 검전기 4) 클램프미터 5) 절연안전모 6) 고압절연장갑 7) 절연장화
가스	1) 가스누출검출기 2) 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4) 가스누출 검지액



분야	장비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누금 0.1옴 이하)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3) 정전기 전위측정기 4)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5) 진동시험기 6) 표면온도계(섭씨 영하 10도 ~ 300도) 7) 두께측정기 8) 소화전밸브압력계 9) 방수압력측정계 10) 포콜렉터 11) 헤드렌치 12) 포콘테이너
건축	1) 거리측정기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밀리미터 이하일 것)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I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I

수수료 및 교육비 (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2·3급시험: 1만2천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만6천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	계산식
수수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 술 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산식									
진단 단계	용도별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자	그 밖의 기술사 등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 조사	전체	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 인수기지, 가스공급 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 초과 ~ 15,000 이하	1.5	0.50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	0.50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	1.00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	1.00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	1.50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	1.50
40,000 초과 ~ 45,000 이하	4.5	1.50
45,000 초과 ~ 50,000 이하	5.0	1.50
50,000 초과 ~ 60,000 이하	6.0	2.00
60,000 초과 ~ 70,000 이하	7.0	2.00
70,000 초과 ~ 80,000 이하	8.0	2.00
80,000 초과 ~ 90,000 이하	9.0	2.00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0	2.00
100,000 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I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추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공통(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방 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VR 등) 장비 및 기기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1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임시소방시설 실습·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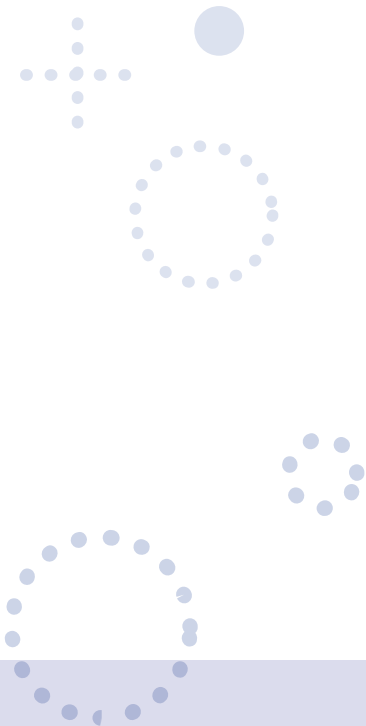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목록표

- [서식1]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서식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3]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서식4]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 [서식5]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 [서식6] 손실보상 청구서
- [서식7] 손실보상 합의서
- [서식8]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 [서식9]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 [서식10] 화재예방 조치명령서
- [서식11]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 [서식1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서식1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서식14]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서식1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서식16]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서식17]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 [서식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서식1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서식2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2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서식2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 [서식2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 [서식24] 수료증
- [서식25]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서식26]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 [서식27] 실무교육 수료자명부
- [서식28]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서식29]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 [서식30]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
- [서식31]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
- [서식3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 [서식33]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 [서식34]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 [서식35]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
- [서식36]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서식3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 [서식38]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서식39]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0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4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4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관련 법령·고시·훈령

4-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 2. 9.]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2017. 5. 2.>

②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11. 5.>

[전문개정 1996. 2. 9.]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7. 9.>]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2. 13., 2008. 7. 10., 2010. 11. 5.>

[전문개정 1996. 2. 9.]

제7조 삭제 <1996. 2. 9.>

제8조 삭제 <1996. 2. 9.>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 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춘 것



-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8. 27.>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強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9.>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5., 2015. 7. 9.>

[본조신설 2008. 7. 10.]

[제4조에서 이동 <2015. 7. 9.>]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 ②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구를 설치할 것
5. 배연구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구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 삭제 <1996. 2. 9.>

제16조 삭제 <1999. 5. 11.>

제17조(배관설비)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탕설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 삭제 <1996. 2. 9.>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2. 4. 30.]

[제목개정 2021. 8. 27.]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9. 12. 31., 2021. 8. 27.>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절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해야 한다.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제목개정 2021. 8. 27.]

제19조 삭제 <1999. 5. 11.>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11. 5., 2012. 4. 30., 2021. 8. 27.>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다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 2. 13.]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5.]

제21조 삭제 <2013. 9. 2.>

제22조 삭제 <2013. 2. 22.>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 5. 11.>

②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8. 3. 14., 2012. 4. 30., 2013. 3. 23., 2013. 9. 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제목개정 2012. 4. 30.]

제24조 삭제 <2020. 4. 9.>



4-2 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Ⅰ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제3조 삭제 <2009. 4. 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5조 삭제 <2014. 7. 7.>

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Ⅰ

[시행 2022.12.1] [소방청훈령제283호, 2022.12.1.,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소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작성서식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작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분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등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또는 현장 확인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허가등 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5조(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동의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별표 2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 대상, 별표 4의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현장 이탈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대행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인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10조(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해임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 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 해임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원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선임 · 해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방본부 ·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인 경우 완공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일 등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
6.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한국소방안전원) 간 데이터 연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동일한 산업단지 여부, 공동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안전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외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5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감독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17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소방시설업자협회”라 한다)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다.

제19조(서면심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 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제20조(현장조사) 제18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및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실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제2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도지사는 사본 보관)
-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 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2조(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과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 :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28조(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보기)

제 서울(서초)-2015-0001호

제 경기(구리)-2015-0007호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보기)

제 2015-01-0001호

제 2015-03-0007호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부분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즉시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변경된 서류(소방시설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1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와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 · 과태료 · 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 · 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 · 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제34조(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5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 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 관련 자치법규 등)과 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Ⅰ

[시행 2023.6.23] [소방청예규제87호, 2023.6.23.,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학식·경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안전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
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③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은 안전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전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전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안전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안전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의안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심의 안전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심의 안전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심의 안전에 대해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 · 의결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제2소위원회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 · 신공법 등 검토 · 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3소위원회

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 ·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Ⅰ

[시행 2022.12.1] [소방청훈령제284호, 2022.12.1., 전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3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

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이용자 특성 및 시기·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화재안전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

2.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④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일부만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① 화재안전조사는 영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1. 피트층, 파이프샤프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에 관한 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4. 피난안전구역, 소방관 진입창의 유지관리 사항

제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①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등의 작동 ·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0일 이내
 2. 그 밖에 공사의 규모 ·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내
- ②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화재안전조사결과 별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⑤ 화재안전조사결과 건축 · 전기 · 가스 등의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영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중앙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
 - 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 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 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
 - 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조사단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 · 운영하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하 “중앙소방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9조(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두며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현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분야별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조사단의 업무분장) ① 단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기획총괄반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
2. 회의소집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결과보고, 조사결과 조치
4. 조사단 전체회의, 워크숍 개최 등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현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2.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자료 작성
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점검장비 등 운영
4.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 ①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조사반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조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조사단원 본인 또는 조사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조사단원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조사대상 관계인 및 단원 간 불화 등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8. 기타 조사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 ②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2. 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14조(화재안전조사 증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
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제15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출장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있다.

제17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안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 ①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반자 등 통보)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① 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결과 중 기타대상의 고급 또는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화재안전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Ⅰ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69호, 2022.12.1., 전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賞)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경험 등을 중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관련법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면제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면제대상	구 분	기 준	면제 기간
	대한민국 안전대상(償)	대통령·국무총리표창	3년(종합점검 면제)
		장관·소방청장표창	2년(종합점검 면제)
		시·도지사표창	1년(종합점검 면제)
	공간안전인증	(사)한국안전인증원 평가	공간안전인증 지정 기간까지 (종합점검 면제)
	화재안전등급	(사)국가화재평가원 평가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까지 (종합점검 면제)
	안전관리우수업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기간까지 (종합점검 면제)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평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평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자체점검 면제)
※ 1.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Ⅰ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76호, 2022.12.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2. 1.>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4. “수평지진하중(F_{pw})”이란 지진 시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 같은 크기의 정적지진하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한 지진하중을 말한다.
5. “세장비(L/r)”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6.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7.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을 말한다. 단, 구경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는 각도변위를 0.5° 이상으로 한다.
8.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9.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0. “가동중량(W_p)”이란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동,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배관 및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를 적용한다.



나.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유효중량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12.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구조부재”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14. “지진하중”이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15.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16. “지진동”이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17. “단부”란 직선배관에서 방향 전환하는 지점과 배관이 끝나는 지점을 말한다.
18. “S”란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고려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로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지진구역에 따른 지진구역계수(Z)에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 2.0을 곱한 값을 말한다.
19. “Ss”란 단주기 응답지수(short period response parameter)로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를 2.5배한 값을 말한다.
20. “영향구역”이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예상구역을 말한다.
21. “상쇄배관(offset)”이란 영향구역 내의 직선배관이 방향전환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우, 중간에 방향전환 된 짧은 배관은 단부로 보지 않고 상쇄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22. “수직직선배관”이란 중력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직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3. “수평직선배관”이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offset)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24. “가지배관 고정장치”란 지진거동특성으로부터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파손, 변형 등으로부터 가지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와이어타입, 환봉타입의 고정장치를 말한다.
25.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한다),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말한다.
2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7.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수평직선배관의 진행방향(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8.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란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횡 단면상에서 전·후·좌·우 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② 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2.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3.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하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가. $F_{pw} = C_p \times W_p$

F_{pw} : 수평지진하중, W_p : 가동중량

C_p : 소화배관의 지진계수(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산정방법 중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수평지진하중(Fpw)으로 적용한다.

4.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을 팽창성·화학적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 ④ 수조·가압송수장치·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6. 삭제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3.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 ③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mm 내지 100mm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개정 2022. 12. 1.>
- ④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 ③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 ②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1.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 라. 지진계수(C_p) 값이 0.5 이하일 것
 -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5.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 삭제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①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어반등)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



4-3 소방 경력관련 행정규칙

I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I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73호, 2022.12.1.,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사. 소방용 기계 · 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 · 기구의 설계 · 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9. 1. 22.>
 - 차. 시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9. 4. 22.>
3. 산하 · 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개정 2018. 11. 6.>
 -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 진단 · 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 · 검정 · 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할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할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 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개정 2019. 1. 22.>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화재안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대책·홍보·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제5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키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Ⅰ

[시행 2023.12.13] [소방청고시제2023-46호, 2023.12.1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소방안전관리자)044-205-7443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소방시설관리사)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 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Ⅰ

[시행 2024.1.4] [소방청고시제2023-55호, 2024.1.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044-205-7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
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설계업(기계·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
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사본을 포함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향”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7)에 따른 경력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학력 인정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행정·관리·사무·경리·구매·건설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양성·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 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 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감리원·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이의·정정 및 취소 신청 등

제12조(이의·정정 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 ① 이 기준에 따라 협회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등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등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I

[시행 2020.1.28] [소방청고시제2020-1호, 2020.1.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044-205-75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키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I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I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71호, 2022.12.1.,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 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삭제
 -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조제2호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제5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을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 다. 시·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Ⅰ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72호, 2022.12.1.,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과)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 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키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4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I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I

[시행 2022.12.1] [소방청고시제2022-77호, 2022.12.1.,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사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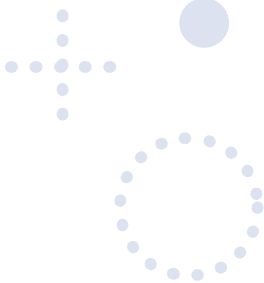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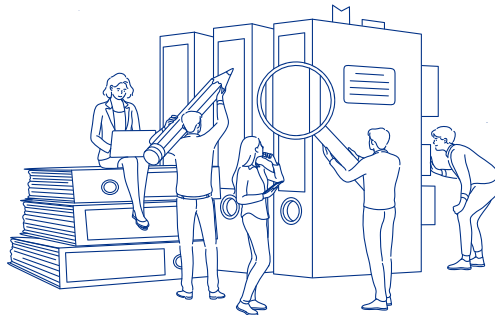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소방청)



일 러 두 기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1-1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I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 (소방공무원) I

질의 01



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 된다면 제4호 “그 밖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회신 0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사유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제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실·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의 02



①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기간에 자체점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기신청 처리해야 하는지?

②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여부?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하여 증축, 개축 등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자체점검 실시 여부?

회신 02



①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자체점검 미대상 ▶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신설된 후 최초점검 등 자체점검 실시

② 기존 수신기 및 소화펌프 등을 공유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자체점검 연기 가능

③ 기존 건축물 등과 관계없이 증축된 부분에 별도로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은 자체점검 연기 불가능



질의 03

Q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회신 03

A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고 배치신고를 한 경우를 말함(점검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입원 · 외국출국 · 여행 · 회의참석 등이 해당)

질의 04

Q 현장점검 후 불량조치 내역 확인하면 반드시 과태료 처분하고 조치명령서를 즉시 보내는지?

회신 04

A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행계획을 완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임.

질의 05

Q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중대위반 사항도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다면 심의회없이 수리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는지?

회신 05

A 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 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인은 고장난 소방시설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임.

또한, 중대위반사항도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이 경우 이행기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및 고장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부여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이고,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됨

질의 06

Q 자체점검 시 점검기구 미사용하여 점검한 후(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모호함) 보고서 제출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거짓보고로 봐야하는 건지?

회신 06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라 자체점검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 미사용 시에는(관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관리사)는 법 제22조 위반으로 거짓점검(행정처분)에 해당함
다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증 곤란(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 함)

질의 07

Q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시 업체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한지?

회신 07

A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 가능함

질의 08

Q 최초점검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라목1)에서 최초점검 60일 이내, 별표3 제3호라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이후 다음해부터라고 되어 있음. 또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대로 한다면, 최초점검 이후 1년뒤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08

A 최초점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최초점검 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해부터 실시
※ 다만, 별표 3 제3호라목3) 중 가목3) → 가목4)로 인용조문 오류임



질의 09

Q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위 “지연 완료 기간”의 해석이, 지적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했다는 뜻인지요.

회신 09

A “지연 완료 기간”이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 즉 지적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한 후 보고한 것을 의미함

질의 10

Q 업체 공사일정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계획 완료일이 지나 공사 완료 후 소방서에 이행완료 보고한 경우 처벌 대상인지?(이행완료 보고 기한 내 보고)

회신 10

A 이행계획 완료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부과 원칙임. 다만, 기간 만료 후 공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서장에게 있음.

질의 11

Q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시 이행계획 완료일이 5일 이하로 공사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

회신 11

A 연기신청 가능. 다만, 공사 진행사항 등 고려 필요

질의 12

Q 이행계획 5가지 중 1~2가지 사항(1달 이상 걸릴 공사로 판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완료료를 기한 내 보고 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기간이 지나 연기하지 못한 상태)

회신 12

A 관계인 귀책사유로 연기신청을 안한 것이므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난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임

질의 13

Q 중대위반사항 수리 등 필요한 조치 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지?

회신 13

A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

질의 14

Q 이행계획 완료 보고를 1개월 이상 미제출 시 업무처리 절차는?(예: 10일 이내 해당 건물 현장 방문하여 과태료 진행 및 사전 조치명령서 발부 등)

회신 14

A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고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하여 업무처리

질의 15

Q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팩스, 전자우편(메일)로도 제출 가능한지?

회신 15

A 보고(제출)방법은 서면, 팩스, 전자우편(메일) 및 전산시스템으로 가능. 다만, 전산시스템(소민터)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받는 것이 타당



질의 16

Q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회신 16

A 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일을 통보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확인

질의 17

Q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 시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 후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신 17

A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 처분 가능(다만,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소규모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님)

질의 18

Q 공동주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세대 내 점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18

A 세대점검 내역은 총 세대수 중 점검한 세대수를 기재하며(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되며, 세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질의 19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이 철거 및 건축공사 예정으로 공실·폐쇄 및 단전·단수 상태인 경우로써, 연기 사유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연기신청도 불가하며, 실질적으로 소방점검이 불가한 상황 때 자체 점검 처리 방법은?

회신 19



이 경우는 이 영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함

질의 2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에서 이행계획기간은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 위반사항도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법제23조제1항 중대위반사항은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해 점검일로부터 산정해야하는지?

회신 20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 21



「소방시설법」제59조제4호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위반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이행계획서 제출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또는 규모·절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하는지?

회신 21



중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계획서 제출 전부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심의회 등의 복잡한 절차는 담당자 업무 과중이 예상되며, 간단한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행계획 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22



이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리 부서의 장 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소방시설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 최소화 필요

질의 2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절차가 복잡 (입주자대표회의, 경쟁입찰 등)하여 기간 소요가 상당함.

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 보고 당시 예상되는 이행계획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연 또는 공사업체 유찰 및 계약문제로 인하여 이행계획 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연기는 불가한지, 무조건 조치명령 발부 해야하는지?

회신 23



영 제35조제1항제4호 적용여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질의 2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에 완료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경우 우편송달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이행계획기간은 관계인이 우편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재산입하는지? 기존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한 일 다음날부터 산입하는지?

회신 24



점검기간을 달리 정하여 문서(우편)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받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이행계획대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전화, 문자로도 가능

질의 25

- Q** 「소방시설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체점검결과를 공개해야되는 대상물의 기준과 공개기준과 공개와 관련한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신 25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관계인에게 통지 후 공개할 수 있음

질의 26

- Q**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별 종합(30%), 작동(50%) 점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업체에서 점검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지침으로 세대별 자체 점검 시에도 인정 가능한지?
(예) 세대별 점검기록부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제출

회신 26

- A** 입주자가 세대별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도 인정됨

질의 27

- Q** 자체점검 이행기간 최대 20일 초과하면 검토 및 내부 결재를 하고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담당자 재량으로 10일~15일 연장 가능한지? (대상처마다 일일이 결재해서 통보하기에는 업무 과중하다 생각됨)

회신 27

- A** 소방시설 고장정도, 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질의 28

Q 이행계획서 불량사항 조치 기간이 점검일로부터 20일인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인지 시정계획일 산정 시작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회신 28

A 이행계획 완료 기간은 보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질의 29

Q 이행계획 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 후 조치명령 순서로 하는데 이때 조치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 후 조치명령 후 현장확인. 이 순서로 하는 것인지?

회신 29

A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 조치명령 → 현장확인

질의 30

Q 이행계획완료 후 결과 보고 시 소방시설 공사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관계인이 자체 수리한 대상이거나 업자가 수리한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어 계약서 등이 생략된 경우도 반드시 공사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

회신 30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해당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첨부

질의 31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내 이행기간 기준일(10일, 20일)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회신 31

A 소방시설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질의 32

Q 세대점검의 미 실시 사유 - 불가피한 사유 및 미점검 세대현황 보관 시- 가 있는데 사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필요

회신 32

A 2년 이내 세대점검을 못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못한 세대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사무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

질의 33

Q 공동주택의 경우 관계인 점검표 보관여부 및 점검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보고서 접수 시 첨부 서류에 관계인 사인(도장)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

회신 33

A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세대별 점검표 작성 불필요. 다만, 입주인 등이 점검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 함.(사인 여부 등은 관리자 요구 시 작성 필요)



질의 34



복합건축물(구분소유자 다수)일 경우 이행결과보고 시 개별 소유주 부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이행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개별 소유주의 경우 이행계획서 상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기간 내 조치가 안 된 경우

회신 34



이행계획서는 관계인이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제출)하는 것으로 조치명령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고지할 필요는 없음. 관계인 간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 가능

질의 35



- ① 유치권 행사로 인해 건물 출입 폐쇄를 한 경우와
- ② 건물 철거 예정으로 공실 상태 및 출입 폐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은 어떤 조항에 해당하여 연기 처리를 해야 하는지 ?

회신 35



「소방시설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적용 가능합니다.

질의 36



종합정밀점검의 “최초점검” 대상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도 “최초점검” 대상이 되는지?

회신 36



용도변경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됨

질의 37

Q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체없이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은 없는지?

회신 37

A 「소방시설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질의 38

Q 공동주택의 개인세대 내 점검 시 소방펌프 및 화재수신기 등 점검을 완료한 후 야간 또는 휴일 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 맞벌이세대, 점검기간 부재세대 등 야간 및 휴일에 점검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인지?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치여부에 따라 점검비용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

회신 38

A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는 개인 사생활 공간임을 감안하여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거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이 경우 관리자 및 입주민이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점검기간 내에는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기간이 끝난 후 추가 의뢰한 경우에는 배치신고 없이 점검 가능

질의 39

Q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에 대한 해당 사유 중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시장) 등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보수비용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한 기간이(회의 의결)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등 시달 계획이 있는 것인지?

타 법에 의하여 적법한 자금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절충안의 부존재로 인하여 집단소송의 여지가 있음

회신 39

A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시달 계획 없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것



질의 40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이용(의무)에 대하여 대상 관계인이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한 건지 이용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40



관리업자등이 점검할 때 확인하는 등 장비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 함.

질의 41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한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배치통보일과 관계없이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인지?

회신 41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신고를 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인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 규정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2



개정된 자체점검 법령의 경우 기존 법령에서 부적합 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치명령 통보하던 것에 대비하여 조치명령 통보 전 먼저 관계인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 후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회신 42



자체점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고장난 소방시설에 대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질의 43

Q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점검을 세대 수 대비 종합 30%, 작동 50%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범위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류를 반려시켜야 하는지?

회신 43

A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은 세대점검 비율하고 관계없음. 다만, 관리자 및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세대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필요

질의 44

Q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이 여러 동으로 만약 전체동을 일괄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의 기준이 되는 빠른 사용승인일은 해당 동의 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예시 : A동-2007년 11월(최초 사용승인동), B동-2010년 3월(증축동)일 경우 어느 동을 기준으로 일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44

A 자체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됨

질의 45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가목 중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및 소방안전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분에서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 중 관리자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라면, 아파트등에서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45

A 이 법(아파트등)에만 해당되는 용어임



질의 46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가 없는지?

회신 46



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와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등

질의 47



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상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점검 여부?

회신 47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아파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점검대상이나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

질의 48



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점검 미 실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회신 48



<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8.12월, 법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으로 명시
- 현행 질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기관의 상급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필요

질의 49

Q 관계인 점검 시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49

A 관계인 점검 시에도 별지 제4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질의 50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과 관련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예로 아파트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기간을 20일 이상 길게 줄 수 있는지?

회신 50

A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질의 51

Q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점검현황을 제외하고 제출 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건가요?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 또는 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인지?

회신 51

A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자체점검 기간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2년이내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점검인력 배치기간 중에 점검한 사항만 점검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대비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불가함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세대점검 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음(현황만 기록 유도)



질의 52

Q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기신청 시, 자체점검은 자체점검 연기신청서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52

A 적용 법령이 달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함께 처리해도 가능함

질의 53

Q 자체점검의 면제나 연기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ex. 6개월, 1년 등)

회신 53

A 면제나 연기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질의 54

Q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시 증빙서류(단전·단수 등) 필요 여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필요시 단전·단수 증빙서류 보완)

회신 54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55

Q (자체점검 점검자) 작동대상인 간이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물 점검자에 일반 소방안전 관리자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가능하다 적혔음)

가) 관계인(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 관리자·기술사 필수조건 아님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회신 55

A 해당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도 작동점검 가능합니다.

질의 56

Q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려면 점검실적이 있어야 함. 그럼 점검실적이 있을 수 없는 신생 업체의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보고서 접수할 때 업체가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참조

회신 56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신규로 업을 등록하는 자도 점검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57

Q 자체점검 등의 연기 사유로 개정법에는 없지만 기존 유예 업무처리 지침에 있던 사항(증축, 대수선, 폐업, 건축물 미사용 등 인정이 되는 건지?

회신 57

A 「소방시설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참고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질의 58



소방시설 자체점검 연기 기간 만료 후 며칠 이내에 자체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 58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연기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

질의 59



중대사항 또는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자체점검 서류 접수 전에 조치 완료되었을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행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회신 59



자체점검결과 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불필요

질의 6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게시 후 제거해도 되는지?

회신 60



30일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게시)한 후 제거하여도 됨

질의 61



「소방시설법」제22조와 관련하여, 최초점검 후 6개월 뒤 작동점검은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61



최초점검 실시 후 작동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함

질의 62



「소방시설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최초점검 후 6개월 뒤 작동점검은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62



최초점검 실시 후 작동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함

질의 63



「화재예방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관련하여 화재 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 기간 연장 신청 시(신청기간 불명확), 「소방시설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과 동일한지?

회신 63



「화재예방법」에서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과 관련,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준용할 필요는 없음. 조치명령등 기간완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질의 64



자체점검 불량 시 이행기간이 너무 짧아 아파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까지 진행되면 30일은 걸리는데 법령에 나와있는 최대 기간이 20일밖에 되지않아 관계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회신 64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기존 조치명령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을 부여하면 됨.



질의 65



자체점검 대상물 부분 연기가 되는지?

회신 65



관계인이 부분 연기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부분연기 결정하면 됨.

질의 66



공동주택 전세대 점검 2년동안 100% 대상인데 협조가 안 되는 세대가 있어 100% 완료되지 않았을 시 처벌 규정은?

회신 66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공동주택 화재저감을 위해 행정지도 필요)

질의 67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각 사유외에 업체의 업무 차질로 늦어지거나 부품수급 등의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대상은 단서조항으로 연기사유 신청이 되는지?

회신 6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

질의 68

Q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대상 확인한 결과 폐업처리된 대상이라면 그 시기부터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연기신청을 받아도 되는지?

(예) 8월 작동점검 대상인데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9.16.에 확인한 결과 폐업 중인 대상물이 있는 경우, 8월부터 폐업으로 단전단수가 된 상황이라면, 9.16.부터 연기 신청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대상물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68

A

불가피한 경우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자체점검 연기처리 가능(관계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연기 신청토록 하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한 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부과 가능

질의 69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관련,

▷ ‘바.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업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간주하여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69

A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가능

질의 70

Q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선임증 및 선임이력서 발급 관련,

▷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선임증 발급, 미발급 선택 및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 미발급 체크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70

A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발급 미발급 여부 결정 가능함



질의 71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 제출한 기간 확인 방법?

회신 71



현장 표본조사 시 관계인에게 문의 또는 서류확인 등을 통해 확인

질의 72



증축(별개동/가로 증축)이 아닌 세로 증축일 경우로서 증축된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최초점검 실시 시 기존 부분+증축부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하단 비고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회신 72



증축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새로 신설된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 소방시설이 기존부분과 분리된 경우에는 증축부분만 실시하고 연계된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하여 최초점검을 실시함

질의 73



전력구(지하구) 관련 소방시설 신설 시 최초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력구(지하구)는 시설물로서 사용승인일이 없으나 최초점검을 해야한다면 기준일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삼아도 되는 것인지? 최초 점검후 다음연도부터는 작동점검만 해도 되는건지? 종합점검 시기에는 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문구가 없음

회신 73



최초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신설 + 건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없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소급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초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시설완공검사일 다음연도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질의 74

Q 60일 이내 최초점검 이후 소방시설 불량 발생 시 소방시설업체(설계, 공사, 감리) 처벌 가능 여부? → 건물주(발주자) 처벌 요청 시 or 미 요청 시

회신 74

A 최초점검 도입목적은 부실 시공 및 감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나 부실 시공 및 감리가 명백한 경우 현장 조사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

질의 75

Q 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2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당범위가 광범위한데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 범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회신 75

A 감지기 불량 등으로 수신기 음향을 정지하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등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임

질의 76

Q 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4번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의 해당범위가 광범위한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완전 밀폐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해서 적용시켜도 되는지?(완전밀폐 불량, 폐쇄력 불량 등)

회신 76

A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본래의 기능”이란 방화구획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완전밀폐를 말하는 것은 아님. 철거 또는 훼손되어 화재시 연소확대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질의 7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기간 산정 관련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지적내역은 여러 사항이 산재되어 있어 10일 이내, 20일 이내인 사항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로 산정하면 되는지 각각 10일, 20일 이내 산정해야 하는지?
2. 각각 산정이 될 경우 10일 이내 조치사항인 것과 20일 이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각각 해당 완료일에 확인 해야 하는지? 최장 소요되는 지적사항의 완료일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3. 제23조제5항에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여러 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복잡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이행 완료 기간을 30일 산정 후 해당 완료일에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77



이행계획 완료기간 산정은 소방시설별로 각각 산정하거나, 최장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다만, 최종 확인은 이행계획 완료일 이후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완료 증빙자료 제출 후 10일 이내 실시

질의 78



관계인이 이행계획서 제출 시 기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내부 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78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 후 문서로 통보(10일 이내)

질의 7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소방시설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행 계획의 완료기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아파트 및 특급대상물 등은 계약방식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계약방식선정->입찰공고->현장설명->업체선정->착공->준공등의 절차 진행 시 최소 필요기간이 8주라고 하는데, 단서조항(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이행계획서 상 해당 과정의 내용을 기입한다면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8주 이상 정할 수 있는지?

회신 79



소방시설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함. 다만, 절차상의 이유는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최대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질의 80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등에 따른 추후 자체점검 시기(기준)는?

※ <기존 업무지침> 기한만료 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내

회신 80



연기결정 통보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

질의 8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행계획서(10일, 20일, 달리정한 기간)의 적합판단 기준은?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기간과 다르게 통보할 때만 문서로 통보하는 건지?

예) 이행계획서의 기간 40일(규모·내부절차등 사유) 작성 제출 시, 이행계획서의 기간을 인정할 때 제23조제5항 후단을 적용하여 구술 등으로 40일 통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1·2호의 기간과 다르니깐 기간을 달리 정해서 문서 통지?

회신 81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통보를 원칙으로 함. 관계인이 정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문자, 전화 등 가능(향후 책임소재 등을 대비 기록 관리)

질의 82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단전 조치 포함) 및 기존 건물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 점검 연기 사유에 해당. 이 경우 관계인이 연기 신청하여야 함에도, 관계인의 소재 불명(건축물 대장상 소유주의 주소가 관할 시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서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등의 사유로 소방서장 직권 연기 가능 여부?

회신 82



관계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소방서장 직권으로 연기 가능함



질의 83



이행계획 완료 후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제4항)

- 1)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법에 명시된 부분 외에는 담당자가 꼭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 2) 기존 시달된 문서인 “청 화재예방과-2727호(2019.4.15.)”와 달리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건지
- 3) 이행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대 며칠 이내에 현장확인 해야하는지 지침에 기재 요청

회신 83



- 1) 법 제23조제4항에서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 2)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불필요
-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현장 확인

질의 84



이행계획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행 완료 연기에 대한 기간(시행규칙 제24조) ① 지침 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1년

회신 84



고장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질의 85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에서 이행을 위한 기간

- ① 지침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90일

회신 85



고장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질의 86

Q

자체 점검 면제, 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① 지침상으로 법률 단어에 대한 정의 필요함

ex) 면제 : 자체점검을 해당 연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연기: 자체점검을 해당 월에만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연도의 다른 달에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회신 86

A

영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제 불가능함

질의 87

Q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30일 이상)에 대한 기준 (시행규칙 25조)

- ① 게시하고 30일이 지나 점검기록표를 바로 미게시 할 경우 적발 가능 여부
- ② 법령상 문구를 “30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로 해석 가능한지

회신 87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토록 명시하였음(게시기간: 30일 이상)

질의 88

Q

점검인력 배치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 시 업무처리 방법 (법 제22조제2항)

- ① 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일 초과 및 배치 부적합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로 적발 가능 여부
- ② 화재예방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점검이나 불성실점검으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관한 건지?

회신 88

A

배치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시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른 표본조사나 「화재예방 법」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후 행정처분 가능함



질의 89



관계인이 점검 시 점검장비 사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신 89



관계인이 점검할 때 표본조사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점검장비 사용여부 확인

질의 90



중대위반사항 조치시 조치완료 결과를 점검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함께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경미한 불량사항조치완료 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기존에는 점검결과에 (현지 시정완료)만 기재후 제출했음)

회신 90



자체점검시 경미한 불량사항을 시정한 경우 또는 중대위반사항을 조치완료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 작성 불필요

질의 91



법 제24조제2항에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회신 91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공개 가능

질의 92



점검실시 후 보고서 제출 전 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였을 경우, 기타 다른 불량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행계획서 대신 이행완료보고서만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회신 92



불량사항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불필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만 제출

질의 93

- Q**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내용 중 2년의 기간동안 100% 점검이 완료 되었다면, 이후 다시 2년마다 새로운 전수점검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분기(작동대상은 반기)별로 최근 2년간 점검세대를 확인하였을 때 계속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지?

회신 93

- A** 2년마다 세대별 점검 필요

질의 94

- Q**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의 규정에서 연기의 사유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는 재난, 경매, 질병, 부도 등의 사유만 명시됨. 위 사유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① 기간내 완료하고 싶지만 공사업체의 업무 과다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② 관공서, 군부대 등 예산신청 절차 등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연기 사유가 되는지?

회신 94

- A**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가 중대한 위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연장 필요

질의 95

-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1) 관련,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에 펌프 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또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 급수와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는지?

회신 95

- A**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펌프방식, 캐비닛형 등 모두 포함)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체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됩니다.



질의 96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또는 연기에 관한 규정에 있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면제 또는 연기를 판단하라는 것인지?

회신 96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임을 소명할 때 면제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임.

질의 97



세대 내에 ‘중대위반사항’ 중 감지기 작동불량이 나왔는데 세대인의 부재(연락두절 및 외국출장 등)로 인해 이행(수리)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회신 97



세대 내에 설치된 감지기가 일시적으로 작동불량인 경우는 중대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를 한 후 향후 수리해야 할 사항임

질의 98



「소방시설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자체점검 결과 공개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트 개설 및 사용 관련 준비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왜 사전고지가 없는지?

회신 98



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화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 됨

질의 99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관련, 자체점검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함.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사용 의무화에 따른 유무 확인 방법과 담당자 확인이 필수인지, 증빙자료 관련 사항은 무엇으로 같음 하는지?

- 업체 대여시 대여비 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회신 99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점검장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용여부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님)

질의 100

Q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적합, 부적합 관련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신 100

A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최대한 빨리 통보 (최대 10일 이내 처리)

질의 101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자체점검 조치·이행 명령 연기신청 서식은 있으나 조치·이행 명령 서식 없는 이유는?

회신 101

A 통상적으로 조치·이행명령은 문서형식으로 하고 있어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면 됨



질의 102



점검결과보고서는 적정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나, 이행계획서를 보고서 제출일자 보다 늦게(또는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회신 10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보고서 접수 시에 담당자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수리해야 하는 사항임.

소민터로 제출 시에는 이행계획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불가함

질의 103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지체 없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지?

회신 103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 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질의 104



이행계획 기간 협의가 필요하여 소방서에서 기간산정을 해야하는 경우 시행규칙의 기간(10일, 20일)에 맞추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해도 되는지?

회신 104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질의 105

Q 이행계획서 관련하여 연기신청 횟수 제한은 없는지?

회신 105

A 제한 없습니다.

질의 106

- Q** 1) 자체점검 연기사유에 유예 내용이 스며 들었다면, 부분연기는 가능한지?
 2)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기존 유예지침은 스며들지 않은 것인지)?
- (이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등으로 전기를 끊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등 연기사유처럼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에 추가 필요(기존에는 제4항으로 연기 가능했는데, 빠짐으로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3) 이행계획 완료 연기,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연기
- 영 제35조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 연기는 3일 전까지 연기신청 하여야 하고, 영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5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이유는?

회신 106

- A** 1) 부분연기도 가능
 2) 영 제35조제4항 그 밖의 사유에 영 제49조제4항 등 준용 가능(폭넓게 규정)
 3)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자율성이 강함)과 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성격(강제성이 강함)이 달라 신청 기간에 차등을 둬

질의 107

- Q**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 6. (행정사항) 사전통지 미실시 하게 될 경우, 이행명령 통지 발부 후에 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한 의견을 받았을 경우
- ※ (기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수용하게 되어있었음

회신 107

A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사전통지(이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구두 협의 등을 통하여 기간을 협의하면 됨



질의 108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인지?

회신 108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점검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중 특급점검자를 말함.

질의 109



아파트나 대형대상물의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시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각 건별로 전후 사진을 전부 받아야 하는지 동일 불량건의 대표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수십, 수백개 이상의 동일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회신 109



이행계획 완료 여부는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불량 건의 대표사진만 받고, 완료 증명자료가 의심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질의 110



관계인등이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후 증빙사진에서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 결과처리 가능한지?(조치 이전 사진이 없음, 간혹 업체 등에서 조치 전 사진 분실)

회신 110



전·후 사진이 없을 경우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에도 완료처리 가능. 의심되면 현장 확인

질의 111

Q 이행계획서 제출 후 관계인이 부도·경매·유치권 행사 등의 이유로 관계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이행계획 완료 연기가 가능한지?(연기 기한은 경매 낙찰 등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회신 111

A 소방서장 직권으로 이행계획 완료 연기 가능

질의 112

Q 연기 신청이 법 제22조에는 기간이 3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 7에는 별도의 기간이 없습니다.

회신 112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13

Q 최초점검(종합) 사용승일월이 12월일 경우 60일 이내 2월에 최초점검을 했다면 6개월 후인 8월에 하는지? 사용승인월 후 6개월되는 달에 가는게 맞는지?

회신 113

A 최초점검(2월) → 종합(12월) → 작동(그 다음해 6월) → 종합(12월)

질의 114

Q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을 관리소장이 충분한 연락을 취했음에 불구하고 세대에서 비협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신 114

A 소방서에서 세대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행정지도 등)



질의 115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실시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115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세대 전수점검 미실시한 사유만으로 관리자 및 입주인 처벌 불가)

질의 116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공장, 창고시설 등이 삭제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대상물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정지, 폐쇄, 철거한다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의 위배되는가?

회신 116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철거는 가능. 다만 정지 · 폐쇄는 불가(법 위반)

질의 117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10일 이내에 준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방법은?

회신 117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등 확인 및 관계인 진술 확보(「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질의 118

-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등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 공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사 이전 사진을 첨부 없이 공사 완료 사진만 첨부 했을 시?

회신 118

- A** 관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사 전 사진을 안찍은 경우에는 전·후 비교가 불가하기에 완료된 사진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 첨부만으로 완료처리 가능.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실시

질의 119

- Q**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조치명령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119

- A**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하면 됨

질의 120

- Q** 조치명령 등(조치명령, 이행명령) 이것에서 이행명령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120

- A** 「소방시설법」 제5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라 함. 조치명령(대물)과 이행명령(대인) 혼용 사용

질의 121

- Q** 자체점검 보고서에 위임장 첨부 위임장 양식을 따로 배포해 주는건지?

회신 121

-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시 위임장 서식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위임장 서식을 만드는 것은 부적정하여 삭제됨(기존 서식 활용)



질의 122

Q 기존 조치명령보고 외에 이행계획 완료대장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서식이 있는지? 각 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122

A 별도 서식은 따로 정하지 않음. 기존 조치명령서 발부 대장 활용

질의 123

Q <점검기록표 게시> ① 규칙 별표 5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정비기간을 기재를 정확히 해야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점검 대상은 모든 대상물인지? 아님 공개해야 할 대상물이 있는지?

회신 123

A 자체점검기록표 게시할 때 정비기간은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체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물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공개 안해도 됨)

질의 124

Q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101동은 종합점검, 102동은 작동점검으로 각각 다른 경우, 101동 2023년에 100% 점검하고 102동은 2024년 100% 점검하면 인정 해주는지?

회신 124

A 2년 이내 세대점검 완료하면 됨.

질의 125

Q 공동주택 점검 결과보고 제출 시 세대점검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시행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점검한 세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자체 서식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회신 125

A 1) 별지 제36호서식은 입주민이 세대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임.
 2) 관리업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 없이 점검 가능
 3) 자체점검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8쪽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 기타란에 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함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거나 점검한 세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가능
 4)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관리

질의 126

Q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126

A 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추가로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되어 자체점검 시에는 해당시설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질의 127

Q 여러개 동 중 한동을 증축해서 시설이 증설될 경우 해당 동만 최초점검 및 별도 관리하면 되는지?

회신 127

A 소방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동만 최초점검을 하고, 소화펌프 및 수신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최초점검 해야 합니다.



질의 128



증축으로 인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추가될 시 건물 전체를 최초점검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128



소방시설의 종류가 신설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점검은 안해도 됩니다.

질의 129



자체점검 연기 사유 중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도 연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 폐쇄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회신 129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에 건축물이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관계인이 입증·단전·단수 등)하여 제출

질의 130



세대 점검의 경우, 2년 이내 100% 이상은 해야되는데, 2년마다 매번 세대점검을 해야 하는지?

회신 130



최소 2년 이내 세대점검을 해야 함(가스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임)

질의 131

Q 이행계획 미완료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조치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부품수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을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회신 131

A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함

질의 132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을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가 신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132

A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말함

질의 133

Q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133

A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처리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 · 제출



질의 134



건축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등)이 법 개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별도로 없는데 법 내용에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134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초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질의 135



공동주택 특수감지기 점검 가능 시 관리자가 세대 미방문해도 되는지? 아니면 점검표에 보면 다른 사항 점검 위해 방문해야 하는지?

회신 135



아날로그감지기 등 수신기에서 원격점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직접방문 안해도 됩니다. 다만, 단선 등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방문 점검해야 합니다.

질의 136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기간 관련하여 법령에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행기간을 준수해서 계획서 제출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각호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이행기간을 통보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 기구 수리, 정비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리하는 방식이라서 30일 이상 이행기간을 요청하는데 관계인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 줘야 하는지 아닌 법령의 취지대로 이행가능한 최단기간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3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후단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 137



「소방시설법」 제23조제3항(점검결과보고서 관계인 제출 관련)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

회신 137



제출 가능합니다.

질의 138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관련) 중대위반사항을 즉시 수리 않고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은 걸로 보아 처분을 해야 되는지?

회신 138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질의 13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표준이행기간 관련) 이행계획서의 기간 시작일을 우편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여부

회신 139



가능합니다.(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질의 140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확대 해석 할 수 있는지?

회신 140



확대해석 가능합니다. 부도 또는 도산 등

질의 141



자체점검 연기와 면제 신청대상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 건지?

회신 14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

질의 142



관계인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 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이행 완료일 기준으로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를 중단해도 되는지?

회신 142



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도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불량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게시)

질의 143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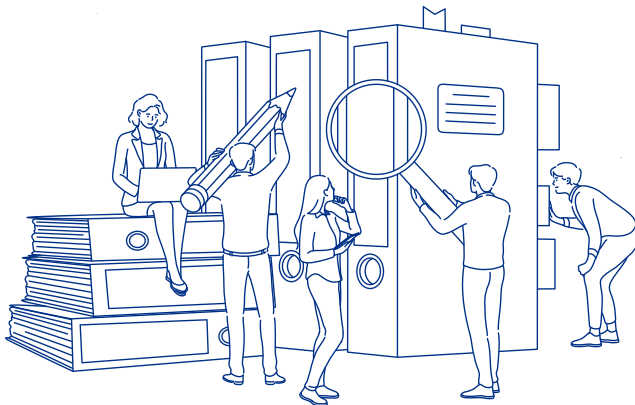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0일 이상 공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개를 하여 30일간 인지 불분명(점검완료 후인지, 결과보고서 제출 후인지)

회신 143

A

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 게시와 같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 여부를 알리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단,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I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 (국민신문고) I

질의 01



도시형생활주택 5층 이상일 경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배치신고를 면적으로 하는지 아파트에 해당되어 세대수로 하는지?

회신 01



도시형생활주택 5층 이상은 소방시설법 상 아파트등에 해당됩니다. 자체점검 배치신고 시 아파트에 따라 배치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02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 명시되어 있는데, 의미는?

회신 02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을 하여야 하며, 1회 점검 시 같은 세대를 중복하여 점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03



하나의 부지내 여러동(소방안전관리자 1명) A동 1급, B동 2급, C동 3급일 경우 C동은 관계인 점검이 가능한지?

회신 03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3급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 그 외 대상은 관계인 점검 불가능합니다.

질의 04

Q 중대위반사항은 소방서에 지적사항으로 제출하지 말라(즉시 조치사항 이므로)는 지역소방서의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 안내에 따라야 하나요?

회신 04

A 「소방시설법」제23조에 따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과 병행하여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이며,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사전에 수리 중 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의 05

Q 공동주택 세대점검 시 입주민 및 관리자가 점검할 경우 불량사항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체 점검결과에 첨부하는지?

회신 05

A 자체점검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점검은 자체점검결과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그 외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점검은 관리자가 취합 · 정비하여야 합니다.

질의 06

Q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나 예방차원에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화재예방안전진단을 사용승인월 이전에 받을 경우)

회신 06

A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자체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연도의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07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회신 07



-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건축물 등이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 2)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의 변경 없이 경계구역 등이 증설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자체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부터 실시하기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신설되는 경우를 말하며
- 3)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피난기구 등 신설은 해당 없습니다.

질의 08



최초점검 시 증축할 경우

회신 08



증축 부분에만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증축부분만 최초점검. 다만, 수신기, 소화펌프 등을 기존 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

질의 09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지하구에 해당되어 2급소방대상물이며,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을 경우 관계인이 점검가능한지?

회신 09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

질의 10

Q 종합대상(사용승인 1월)일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1월에 받을 경우 1월에 종합점검 7월에 작동점검 모두 면제받는지?

회신 10

A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모두 면제됩니다.

질의 11

Q 자체점검 연기 신청 시 연기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할 경우, 명시 한 날까지 자체점검 미 실시 할 경우 처벌가능한지?

회신 11

A 자체점검 연기 사유가 해소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합니다.

질의 12

Q 기존 지하구(전력구) 비상경보설치 대상에서 자탐 이상 등 소급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대상인지?

회신 12

A 최초점검은 건축행위(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행위 없이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경우(지하구, 병원 등)에는 최초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13

- Q**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대 방문 점검을 안해도 된다면 점검업체가 아파트에 30퍼센트나 50퍼센트의 세대점검현황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세대점검률에 따라 해야 하는지?)

회신 13

- A**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세대방문 점검 대신 수신기에서 관리업자 등이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단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 또는 단선 난 세대를 직접 방문 점검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세대점검을 하였다는 기재를 비교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 점검률은 100% 기재. 만약 부재로 못한 경우에는 못한 세대 기재)
- ※ 관리자는 입주민이 세대내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필요

질의 14

- Q**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나목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란?

회신 14

- A**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관 화재동작 신호만 전송하는 일반감지기(유선, 무선방식 포함)와 달리 실시간 감지기 이상유무 확인 및 감도조정 기능이 있어, 비화재보 저감에도 효과적이며, 개인주거 공간인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점검 등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적용에 효과적인 감지기입니다.

질의 15

- Q**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 “중대위반사항”에 충압펌프는 고장이나 주펌프는 정상작동하여 소방시설이 작동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15

- A** 소화펌프에는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충압펌프 고장도 중대위반 사항에 포함됩니다.

질의 16

- Q**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의 뜻이 공항시설에는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여러 건축물(공항시설로 분류)이 있는데 이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은 모두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이 아니므로 자체점검 대상물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 16

- A**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시설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공항 시설내에 있는 모든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 17

- Q**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화재예방법」 제25조제2항(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차-경고,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자격취소)인데, 관리사가 아닌 점검자(특급, 중급, 초급)가 위반 할 경우 처벌규정은?

회신 17

- A** 이 규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관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대행인력의 관리·감독 소홀로 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및 관리자 행정처분 가능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1-2 소방시설법

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01

- Q**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충압펌프로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01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2)가)에 따라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압펌프로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상태로 방치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 02

- Q**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 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신 02

- A**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 시 현장의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03

Q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시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인지?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인지?

회신 03

A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중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 발생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04

Q 소방시설 교체를 하게되면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회신 04

A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 관계 법령에서 그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 또는 민사등을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05

Q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 소방시설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05

A 면적 및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공간도 소방시설 설치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트공간, 외기와 접하지 않는 발코니, 옥탑층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같이 시설별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소방시설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층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옥탑층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유도등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등의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시 폐쇄 및 차단 행위 /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질의 01

- Q** 건축물의 한 개층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고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층의 화재 경보설비 작동을 정지할 수 있는지?

회신 01

-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해당 공사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간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지도감독 하에 해당 부분에 한하여 소방공사 기간 중 정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02

- Q**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 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신 02

- A**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 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시 현장의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I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I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 관련

관계법령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01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회신 01



A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12. 1.부터 포함되므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의 0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영업시간 종료 후 잠가도 되는지?

회신 02



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 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해당 영업장에 근무자 및 손님이 없다면 방법을 위한 폐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03

Q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 03

A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04

Q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회신 04

A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옥상문 개방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은 건축법상 옥상광장 설치대상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 2. 29. 이후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옥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옥상문 개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 05

Q 공동주택 공용 복도 끝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회신 05

A 피난경로가 아닌 복도 끝 공용부분을 특정 개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동 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I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I

공장과 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질의 01



공장 용도의 건물에 동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동일 건물 안에 저장하여, 공장과 창고(공부상 창고시설)로 사용시에 이 건물을 복합건축물로 보아야 하나요, 공장 또는 창고 시설 보아야 하나요?

회신 01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16호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창고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공장 내 창고가 공장의 필수 부속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및 관할 소방서 협의 후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장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02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 창고가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공장 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가목3)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물품을 저장하는 용도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공장 시설로 볼 수 있으나, 질의하시는 창고가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도의 시설이 아니라면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없이 창고시설로 보아 복합 건축물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의 해석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질의 01

Q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분리하기 위하여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조건”을 방화셔터에만 적용하는지? 갑종방화문도 적용하는지?

회신 01

A 갑종방화문의 경우 도어클로저에 의하여 항상 닫혀있다면 소방시설과 연동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한다면 소방시설과 연동 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질의 01



공동주택 단지 내 별도의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등) 소방시설 적용 문의

회신 01



공동주택 부지 내 별도로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은 개별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동에 같이 설치되며, 부대복리시설이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동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질의 02



상가 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신 0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를 적용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을지 여부는 배관, 배선등의 관통부 및 개구부가 없으며 상호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가와 공동주택이 출입구를 공유하지 않고 직접 맞닿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 배관 및 배선이 관통하여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며, 또한 인접한 개구부를 통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확대 여부등을 비롯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9. 노유자시설

나.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01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01



지역아동센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합니다. 별표2 제9호나목 아동관련시설 항목 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노유자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종교시설과 단독주택 소방시설 적용 관련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질의 01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 면적 포함해서 자탐설치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 면적 제외해서 비경대상인가요?

회신 01



귀하가 질의하시는 주택의 주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나목에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 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표에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교시설만의 면적을 적용하여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관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질의 01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지? 업무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신 01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이 아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시는 도서관이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에 있으며, 주 이용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의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 도서관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질의 0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의 발전 시설 중 마.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태양광발전을 하더라도 전기저장 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01



A 전기저장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 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저장장치는「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제2조 제1호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외부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01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하는지?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신 01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나목의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같은 표 제21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02



군부대 내에 설치되는 전투식량 및 중앙조달부식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문의

회신 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창고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 이는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학교 체육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및 합숙소

질의 01



대학교의 체육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0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체육관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나,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교사 및 합숙소만을 교육 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대학시설의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I

공동주택 세대 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2. 경보설비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질의 01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01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에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니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에 “보일러”라 함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 세대 내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 내부의 가정용 보일러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운영 제외 가능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2. 경보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01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01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한다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소명하신 후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거하지 않고 임의로 소방시설을 정지시킬 경우 같은 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제출 I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기 관련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질의 01

Q 종합점검 대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 해당하는 달이 9월입니다. 종합점검 시작일을 9월 30일 마지막날 시작해서 10월5일에 점검이 끝나도 되는지?

회신 01

A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은 달에 점검을 시작하여 종료일이 해당 달을 초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질의 02

Q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제6호나목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회신 02

A 간이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만 적용됩니다.

질의 03

Q 종합점검대상의 건물이 작동점검 시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의 건물인데 사용승인일이 2020.2.3일인 건물이면 그 다음해인 21년 2월에는 종합점검을 하고 그 이후 6개월 이후에 8월달에 작동점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월에 종합점검을 하지 않고 일찍 점검을 해서 1월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을 6개월 뒤인 7월달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종합을 일찍 하더라도 8월에 작동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03

A 종합점검 기준이 2월인 경우, 종합점검을 1월에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7월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04

Q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점검 대상의 내용에만 있고 작동점검만 받는 대상물의 내용에는 따로 명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회신 04

A 작동점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05

Q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유지관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고, 자체 점검 실시 관련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와의 계약을 관계인이 아닌 시설유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 및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관계인이 직접 소방시설관리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소방시설 관리업자와 관계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해야 하나요?

회신 05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시설 유지관리 업체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와의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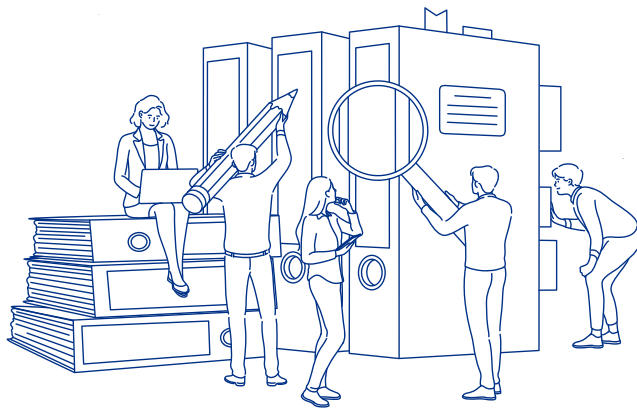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소방대상물에 유치원(1층~4층) 50%, 나머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종합점검이 되는지?

회신 06



상기 건물이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유치원)이 아니면서, 건축물 일부를 사용 하는 일반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방대상물로서 일반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점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이고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2023년 자체점검 제도 관련 질의·회신

2-1 소방시설법

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I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질의 01

Q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8일 시행되어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소방시설의 점검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3조 행동요령의 각 호는 행동요령을 실시하는 순서를 뜻하는 것인가요? 즉, 1호부터 시작해서 2호, 3호, 4호 순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만약 순서를 뜻한다면,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 여부(3~5호)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119에 신고(2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화재인지 여부(3~5호)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실제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만 119에 신고(2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01

A 해당 고시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점검 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요령의 번호는 순서를 뜻하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질의 02



아파트 세대 내 누수확인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직원이 임의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약 4일간 잠그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심지어 스프링클러설비 주변 천장이 아닌 옆 벽면에 물이 흘렀던 상황입니다.

회신 02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소방배관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I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제16조]

관계법령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01



10세대 빌라는 복도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하나요?

회신 01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현행 소방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시 복도 적치물로 인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또는 검사지도팀에 신고하시면 현장 계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 12. 1.부터 포함되므로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의 02



요양병원 치료시간 외 재활치료센터의 방화문에 시건 장치를 해도 되나요?

회신 02



해당 방화문이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인지 여부를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만약 피난통로 상의 방화문에 해당할 경우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방화문 폐쇄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화문 개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03



아파트의 복도에 일체의 물건을 둘 수 없는지? 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거나, 일시보관, 즉시이동, 자전거 일렬보관 등은 허용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허용되는 기준과 사례등이 있는지?

회신 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 등을 피난시설(복도, 계단등)에 적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 9. 28.)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 제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법적 적치물의 허용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적치물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시시정 및 조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04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 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데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04



①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의 피난 시 피난통로 상에 중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②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일 시 중문설치로 옥상으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동법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니고, 4층 주택에서 피난층인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05



미닫이문 미서기문(슬라이딩 도어)또는 여닫이문등의 출입구가 세콤, 캡스등의 보안으로 자동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길 때 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등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잠금장치 풀림)되도록 하여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곳)

회신 05



해당 문이 피난통로 상의 문인지 여부를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만약 피난통로 상의 문일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동법 제61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① 피난을 위한 문이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을 경우 ② 실내에서 피난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개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I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30029호, 2019. 8. 6.>]

관계법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30029호, 2019. 8. 6.>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 마목 1) 나)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 4), 같은 호 마목 3)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 라목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01

Q 의료시설에 적용하는 강화된 기준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015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1일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로 허가받은 의료시설만 해당하는건지요 아님 허가일자 상관없이 모든 의료시설에 해당하는건지? 아님 부칙에 있을때만 강화된기준을 적용하는건지?

회신 01

A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 대상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소급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칙<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의료시설에 대하여 소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추후에 한번 더 개정되어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 4), 같은 호 마목 3)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관계법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질의 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시설법상 적법한지?

회신 0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강화된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 방법

【소방시설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소방시설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강화된 소방시설을 제1항 제2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방시설법 제13조에 따르는 소방시설과 대상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 될 때마다 해당 시설 및 대상에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강화될 수 있는 시설과 대상을 미리 규정해 놓고 관련 법이 개정 될 시에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소급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시설의 의미로 해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에 구체적 소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강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령의 보다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 전(2015. 7. 1.시행)	소방시설법 개정 전(2015. 7. 1.시행)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u>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u>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u>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I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I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질의 01



영내 간부숙소(대략 연면적 1,800㎡)가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사목에 해당되는 영내 간부숙소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간부숙소가 5층 이상이라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 등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라면 같은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024. 12. 1.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본주택'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건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01

Q 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20조 가설건축물 중 가설홍행장에 해당되어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진행됩니다. 이미 다른구에서 2013년~2022년까지 4번을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저희 소방안전계획서 상 할론소화기, 감지기, 경보기,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공개된 유사질의사례를 찾아보니 건설현장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와 같은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하여, 가설건축물(가설홍행장)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01

A 가설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본주택 제외)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와의 협의를 통해 소화기 등 현장상황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6.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질의 01



건축법상의 용도는 운수시설(항만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교육연구시설 등)로 분류하여 적용 가능 여부

본 건축물은 인허가과정에서 항만 내에 건축되는 선박형태의 건축물이기에 건축허가 시 운수 시설(항만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으나, 본래 건축의 목적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자동하역실험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01



질의하신 대상물은 건축법 상 주용도가 운수시설이고 세부용도가 항만시설에 해당되어「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 6.운수시설 라.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건축법상 분류된 용도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 · 도서실 등 교수 · 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질의 01



학교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시설) 5호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역시 학교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회신 01



귀하가 질의하시는 대상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항만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면 해당 대상물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질의 01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01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방법과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이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소방시설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질의 01

Q 지하층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보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가능한지?

회신 01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0호 가목 3) 나)에 따라 주차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개별 용도로 보지 않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용도로 보아 주된 용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부설 주차장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보더라도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3)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군사시설’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01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업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업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01



소방분석제도과-3811(2021. 8. 4.)호 “군부대 내 업체호 및 차양대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지침 알림”에 따라 해당 이글루형 업체호는 출입구 폐쇄형 업체호(공군)로 판단됩니다. 업체호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정비 및 주차 목적 보다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등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 사목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여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구분하고, 설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에 관한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질의 0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법에 따라 주택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확인한 바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이 되는데 그럼 가목과 나목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지가 의문입니다.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로 판단하고 가목에 의해 복합건축물로 안보는 것인지 나목에 의해 복합건축물로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0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에 따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건축법 상 건축물의 분류로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따라서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일 경우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며,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닐 경우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I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I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최초점검) 관련 / [소방시설법 제22조, 최초점검 기준]

질의 01



하나의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자탐, 옥내, 물분무등설비)에 가로 증축(연면적 300㎡, 자탐설치)으로 연결 될 경우 최초점검 범위는?

회신 01



최초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건축물 등이 신축·이전·개축·재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 행위가 있고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대상은 기존 부분에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증설(자탐 증설)된 경우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02



별동으로 기존 건축물 부속 동(자탐) 가로 증축으로 자탐 + 옥내 신규 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범위는?

회신 02



기존동 및 부속동(별동)이 별도 건물로 증축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부속동)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해서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동과 연계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되어 있는 장치(수신기, 소화펌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03



하나의 건축물로 기존건물(자탐, 옥내)에 증축으로 가스계소화설비가 신규 설치할 경우는 최초점검 대상인지?

회신 03



기존부분에 증축으로 소방시설이 신설(가스계소화설비)된 경우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점검등의 자체점검 관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관계법령

별표 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가목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 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질의 01



건본주택의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건물 사용승인 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종합점검의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일이 확인되지 않는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01



종합점검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에서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같은 법 별표 3 제2호 라목 2)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02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6887(2023. 5. 23.,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법령 해석 문의 회신”)호와 관련됩니다. [협회 716번 공지사항]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련, ‘22.12.30. 이후 등록한 신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등록 자격(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점검자 경력수첩)적용 여부

회신 02

A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이 신설(’22.12.30. 시행)되어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시 경력수첩*이 포함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기술인력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점검자로 구분하고 있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관리업 기술인력 등록

※(기존) 자격수첩 → (’22.12.1. 개정) 경력수첩(「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질의 0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6887(2023. 5. 23.,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법령 해석 문의 회신”)호와 관련됩니다. [협회 716번 공지사항]

Q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련,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적용 여부

회신 03

A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력 가산** 적용

*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전체 업종의 선임내역 확인

**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경력에 산입



자체점검등의 자체점검 관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관계법령

별표 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 1)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2) 영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 3) 영 별표 4 제5호 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질의 01



이산화탄소 호스릴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에 해당은 되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는 물분무소화설비에 체크하고 배치신고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해당없음으로 체크하면 되는지?(호스릴 물분무소화설비 가감계수 적용 관련)

회신 01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가감계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나목 2) 에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 자체점검 시 가감계수는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체크하고, 배치신고 시 가감계수 적용 제외하기 위해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점검 처벌 관련 / [소방시설법 제57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관계법령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6항, 제37조 제7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소민센①)

- ④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단위(아파트 단지 등)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가능

예)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있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1개의 소방펌프, 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동에 소화수 공급 및 소방시설 감시·제어 가능

질의 01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회신 01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동)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1동, 2동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2동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8조(벌칙) 제1호에 따라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02

Q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는데 불량사항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14세대가 지적됐습니다. 입주자가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관리사무소 및 각 세대 과태료 처분, 조치명령 가능 여부

회신 02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항에서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소방법상 관리자에 해당되어 이행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세대에 대해서도 세대내 소방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대해 각 세대에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미 이행시 같은법 제57조(벌칙) 제1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관련 / [소방시설법 제25조, 제58조]

관계법령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질의 01



소방시설관리사가 학원의 한 과목을 유료로 강의를 해도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01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8항에 따라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직무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이중취업 금지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관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계법령

별표9(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 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질의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1호에서 “소방 관련 실무경력”의 내용은?

회신 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서 규정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의미합니다.

질의 02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중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다목 2) 라) 다중이용업완비증명서발급 업무, 마)소방시설점검, 바)에 해당하는업무를 센터(파출소)근무 하는 경우도 인정되는지?

회신 0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다목 2)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다중이용업완비증명서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를 전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관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관계법령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질의 0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으로 등록증 반납 조건이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및 폐업에서 휴업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같은규칙 제32조 제4항의 개정 취지가 소방시설관리업 사업주의 휴업을 금지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휴업은 자유이고 등록증 반납 신고 의무만을 삭제한 것인지?

회신 01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시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항 제3호에 따라 “휴업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에 따른 등록증 반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02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중 주인력(관리사)이 퇴사한 경우 30일 이내 재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02



소방시설관리업 휴업 기간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상에서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휴업 시에는 실제 영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휴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판결)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 및 자체점검 관련 법령집

인 쇄 일 : 2024년 11월

발 행 일 : 2024년 11월

발 행 처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전 화 : 02)532-1191

팩 스 : 02)579-1194

인 쇄 : (주)행일미디어

02)403-911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복제,전재,발체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비매품>